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지공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최용재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4
제2장 농지공유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7
1. 농지 현황과 보전의 필요성	7
2. 농지공유제도의 철학적·역사적 배경 검토	9
3. 한살림 생산자 회원의 관련 의식 조사 분석	11
4. 관련 연구 분석	17
제3장 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 분석	19
1. 국내 관련 법·제도	19
2. 국내 사례 분석	31
3. 외국의 사례 분석	43
4. 사례의 비교·분석	53
제4장 농지공유 제도 활성화 방안	57
1. 사례분석을 통한 농지공유 모형	57
2. 사업추진 방안	63
3. 연구의 성과 및 과제	65
참고자료	66
부록 공익신탁법	67

표 목차

<표 1> 지난 30년간 토지이용 면적 추이	7
<표 2> 영농규모 기준	12
<표 3> 한살림 생산자의 특성과 은퇴 후 농지활용계획의 상관관계 분석	15
<표 4> 한살림 생산자의 농지규모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 검증	16
<표 5> 한살림 생산자의 농업시작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 검증	16
<표 6> 농지제도 관련 법률과 체계	19
<표 7> 농지 관련 재산세	22
<표 8>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24
<표 9> 공동체토지신탁의 장단점	45
<표 10> 주요 국가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특징	54
<표 11> 농지공유 수단의 사례별 특징 비교	56
<표 12> 농지공유 모형의 장·단점 비교	6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흐름도	6
<그림 2> 마을공동체의 공유자산 관리방식으로써 계	9
<그림 3> 한살림 생산자의 영농규모	11
<그림 4> 한살림 생산자의 은퇴 후 농지활용계획	14
<그림 5> 공익신탁제도	27
<그림 6>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 체계	30
<그림 7> 한살림 DMZ 평화농장 소개	31
<그림 8> 한살림 성남용인의 한살림 논 지키기 운동	33
<그림 9>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과 종택 전경	37
<그림 10> 동강 제장마을 동강사랑 및 농지 전경	39
<그림 11> 랜드쉐어 매칭 방식	41
<그림 12> 농지공유 모형의 기본원칙	57
<그림 13>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공유 모형	58
<그림 14>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법인이 출자하는 농지공유 모형	60
<그림 15> 공익신탁법인을 통한 농지공유 모형	61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명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지공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기간 : 2015년 5월 ~ 11월

3. 연구 배경

- 친환경 유기농업은 그 특성상 안정적인 농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생산자 여건상 임대하여 농사를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주의 농지 처분,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산자가 애써 가꾼 유기농지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친환경 유기농지가 일반 농지로 바뀌거나,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없어지는 경우 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로 농지면적 감소에 따른 식량 자급 외에 홍수 조절, 토양유실 방지, 기후 조절,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음
- 농지의 보전 외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지 확보도 절실한데, 농지공유제도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젊은 인력이 필요한 농촌에 귀농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높은 지가 등으로 농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농업에도 적용 가능하여 제도적 확산이 절실함
- 농지공유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강화 매화마름 서식지’ 등 환경적 측면에서 시작되어, 최근 ‘한살림 DMZ 평화농장’ 등과 같이 시도되고 있는데, 농지법·개발관련법 등 관련 법·제도로 인하여 본 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공익신탁법(2015년 3월 시행) 도입 등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지공유제도가 지속가능한 농지 보전,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농산물의 공급, 고령화에 따른 후계농업인 양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및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에 절실한 제도로써 정착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농지공유 모델을 제시하여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관 및 단체들의 사업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4. 연구 목적

- 생산자와 소비자,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농지 보전 및 확보를 통해 공익적 기능이 매우 많은 농지에 대한 공유화의 시작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축적 계기 마련
- 현 농지은행이 추구하는 과대투입형 대규모 농업이 아닌 노동집약적 소농의 기반 마련
- 농지공유제도 도입시 현 국내 제도를 감안하여 적용가능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 감소의 대안으로써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촌 진입 관문으로써 농지공유 제도가 활용될 수 있으며, 농지확보가 절실한 도시농업에도 적용 가능하여 농지공유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5. 연구 범위

가. 농지신탁 제도의 이론적 배경

- 농지 현황과 보전의 필요성
- 공유경제로서 농지공유제도 도입의 철학적 배경 검토
- 농지공유 제도의 관련 연구 분석

나. 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농지법·공익신탁법·국민신탁법 등 국내 관련 법·제도의 위상·내용 등 검토
- 국내 사례 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점검
- 국외 관련 현황과 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영국, 미국, 일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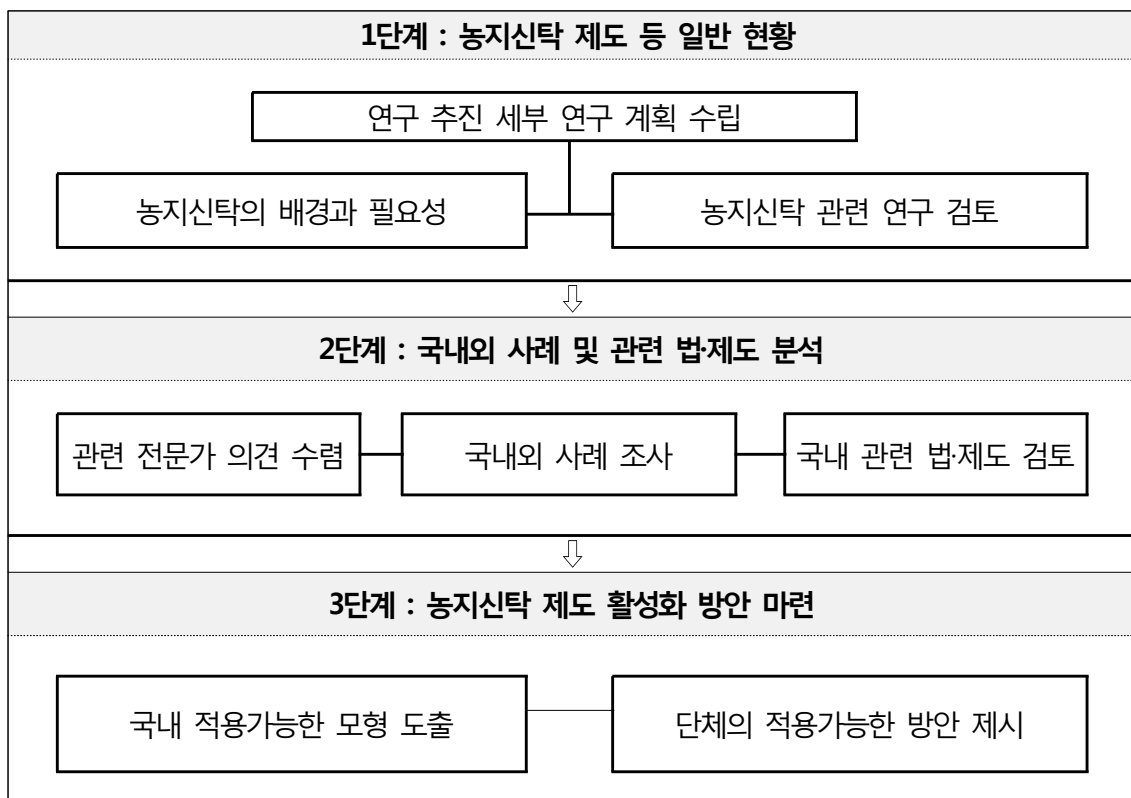
다. 농지신탁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재의 관련 제도하에서 걱정된 농지신탁 모형 제시
- 농지신탁 도입 단체들의 조직화 방안 마련
- 귀농, 도시농업 등 타 부문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6.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각종 논문 및 보고서, 관련 법·제도 검토
-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자문
- 중간점검 및 연구보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그림 1〉 연구흐름도



제2장 농지공유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1. 농지 현황과 보전의 필요성

1) 농지의 감소

- 국토이용 현황(2014년 12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국토면적 10,028천ha 중 농경지면적 1,923천ha(19.2%)로, 산림은 6,408천ha(63.9%), 그 외 1,697천ha(16.9%)로 구성되어 있음(2015년 지적통계연보)
 - 국토이용·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신도시개발 등으로 지난 30년간 도로 121.1%(1,694km²), 대지는 70.2%(1,209km²)로 증가
 - 이에 비해 농지(전·답)는 지난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해 농지 12.9%(2,865km²), 임야 3.1%(2,047km²)가 감소

<표 1> 지난 30년간 토지이용 면적 추이

(단위: 천 km²)

구분	1980	1990	2000	2014
도로	1,399	1,812(+29.5)	2,349(+67.9)	3,093(+121.1)
대지	1,721	1,937(+12.6)	2,278(+32.4)	2,930(+70.2)
농지	22,099	21,483(-2.8)	20,507(-7.2)	19,234(-12.9)
임야	66,128	65,571(-0.8)	65,138(-1.5)	64,081(-3.1)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 5. 8)

- 농경지 면적 1,923천ha 중 논 면적이 1,152천ha(59.9%), 밭 면적이 772천ha(40.1%)인데, 이는 지적상 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은 이보다 작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에는 158만 ha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 농민의 감소와 고령화

- 농가수 1,121천호(2014년 12월 1일 기준)로 농가호당 경지면적 1.72ha이며, 고령화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에 비해 농가는 2만 1천 가구(1.9%), 농가인구

는 9만 6천 명(3.4%) 감소(2014년 농림어업조사)

- 농가의 10세 미만 어린이 인구가 전년 10만 5천 명에서 2014년 9만 3천 명으로 10.9%나 줄어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귀농·귀촌가구가 연 4만 호에 이르지만, 일 년 새 농가인구는 9만 6천 명이 줄어들었음
-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39.1%(전년대비 1.8%p 상승)로 전체 고령화율(12.7%)의 3배이며, 연령별 농가인구는 70세 이상이 27.9%를 차지하며, 60대(21.9%), 50대(19.6%) 순으로 평균 연령은 66.5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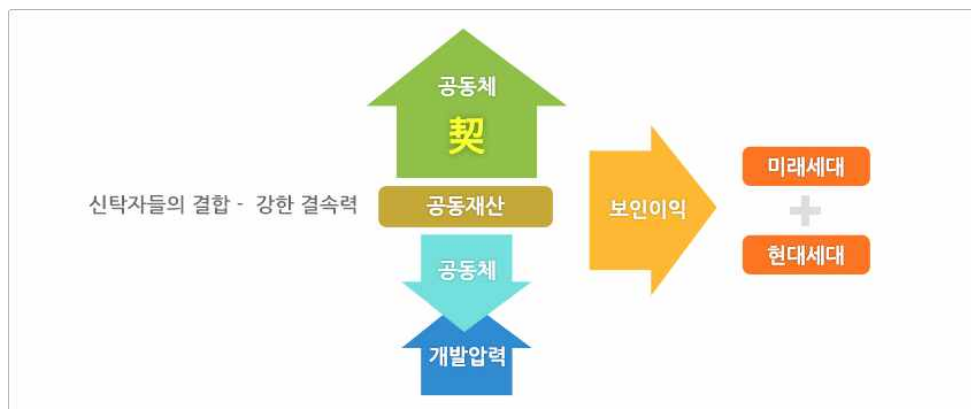
3) 농지보전의 필요성

- 농업은 식량생산 외에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살펴보면, 수자원 함양, 국민정서 순화 및 교육의 장, 아름다운 경관 제공, 대기정화, 생태계 유지, 토양유실 및 홍수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면 식량생산보다 2배가량 많음(농촌진흥청, 2006)
- 특히,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화학투입재의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만들어진 농지의 경우 일반 농업의 공익적 기능보다 매우 크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데에도 기여
-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농지와 농민이 줄어들고 있어 농지, 특히 친환경농업의 농지 보전이 절실한 실정임

2. 농지공유제도의 철학적·역사적 배경 검토

- 농지공유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와 맥이 닿아있는데, 공유경제란, 구성원이 지분을 공유하는 전략이 포함된,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데, 있는 자원을 여러 명이 빌려 쓰거나, 물물교환 또는 품앗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와 대비해 '협력적 소비'라고도 불림
 - 1984년 마틴 와이츠먼(Martin Weitzman) 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그의 저서를 통해 경제침체 극복 방안으로 제안
 - 이후 2008년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발전시킨 용어로 인터넷 및 SNS가 발달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됨
 -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한계비용 제로의 사회』(2014)에서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마을단위로 형성해온 동계(洞契)를 통해 땅의 공유화라는 의미와 더불어 마을공동체의 자치 구조를 유지해 왔음
 - 동계란, 마을 또는 동·리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자치 조직(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동네주민들의 공동재산이었던 공유재산(松山, 漁場 등)은 동네주민의 자격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처분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었다.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동네가입(入戶)과 더불어 취득하고 동네탈퇴(黜洞)와 더불어 상실함

<그림 2> 마을공동체의 공유자산 관리방식으로써 계



출처 : 자연환경국민신탁 홈페이지

- 서양의 경우, 19세기 말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가치 공유화와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으로 시작되었음
- 미국의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1879)에서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토지에 대해 결코 사유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용권만 있다고 주장
 - 지대는 토지의 자연력과 사회의 공동 산물로 개인이 전유하지 말고 공적으로 징수되어 공공 지출의 재원으로 모든 세금을 토지가치세로 일원화하는 단일세(Single tax)를 제시
 - 이후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는 1909년 영국의 국민예산(People's Budget), 덴마크의 정의당(Denmark Justice Party),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국가의 토지제도에 반영되었음
-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 또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편드를 시민의 힘으로 모아 그것을 매입하여 시민의 것으로 영구히 보존하는 운동임
 -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정식명칭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장소를 위한 국민신탁(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으로, 줄여서 ‘the National Trust’라 부르고 있음
 - 1907년 제정된 ‘국민신탁법(the National Trust Act)’에 ‘토지의 양도불능원칙’을 담음으로써 ‘영원한 보존(permanent preservation)’이 가능해짐
 - 이 운동은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 세계 30여 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2006년 3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어 관련 제도가 도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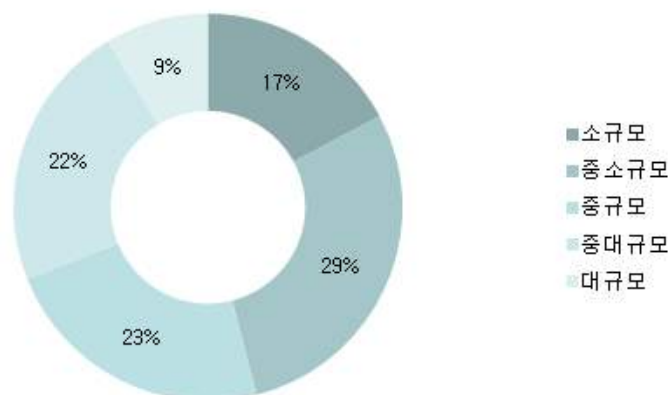
3. 한살림 생산자 회원의 관련 의식 조사 분석

- 2014년에 진행된 ‘한살림 생산자 회원 현황 및 의식 조사’의 결과 자료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있는 문항 중심으로 생산자들의 의식을 분석하였음
- 한살림 농지보전과 관련된 문항으로 나이, 농업시작 시기, 친환경농업 시작 시기, 한살림 가입시기, 영농규모, 농업 위협 요소, 은퇴시기, 한살림의 농업살림 과제를 상관관계 분석 및 t-test 검증을 진행하였음

1) 관련 문항 일반 분석

- 일반 분석항목으로 한살림 생산자들의 평균 나이, 농사시작 시기, 한살림 가입시기는 다음과 같음
 - 나이 : 57.3세
 - 농사시작 시기 : 1984년도
 - 친환경농업 시작 시기 및 한살림 가입 시기 : 2003년, 2006년
- 영농규모 설문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쪽의 표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규모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규모와 중대규모가 각각 23%, 2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소규모 17%, 대규모 9% 순임
 - 농지소유 평균면적은 4,376평 정도이고, 농지임대 평균면적은 2,654평 정도임
 - 인증기준으로는 유기인증이 3,651평, 무농약 인증이 1,588평, 저농약 인증(한살림 자주인증 포함) 579평, 관행이 1,511평 정도임

<그림 3> 한살림 생산자의 영농규모



Ⅲ-15. 올해 총 농사 규모는 어떠하신지요? 인증, 면적, 소유형태별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적어 주세요.

구 분	형 태	소 유 (평)	임 차 (평)
유기재배	논	()평	()평
	밭	()평	()평
	시설	()평	()평
	과수	()평	()평
무농약	논	()평	()평
	밭	()평	()평
	시설	()평	()평
	과수	()평	()평
저농약 (한살림 자주인증)	논	()평	()평
	밭	()평	()평
	시설	()평	()평
	과수	()평	()평
관행농업	논	()평	()평
	밭	()평	()평
	시설	()평	()평
	과수	()평	()평

<표 2> 영농규모 기준

품목		소규모	중소규모	중규모	중대규모	대규모
논		3,000평 미만	3천~9,000평	9천~1만5천평	1만5천~3만평	3만평 이상
과수		600평 미만	600~2100평	2100~4500평	4500~7500평	7500평 이상
밭	시설 재배	600평 미만	600~1500평	1500~3천평	3천~6천평	6천평 이상
	노지 재배	900평 미만	900~1500평	1500~4500평	4500~6천평	6천평 이상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농규모 기준

비고 : 생산자는 논, 밭, 과수 등 다양하게 영농활동을 하고 있어, 논을 기준으로 하여 과수에 3, 시설재배에 4, 노지재배에 3의 가중치를 두어 영농규모를 판단하였음

- 한국의 농업위협요소와 한살림 농업살림 과제를 농지 관련 항목으로 분석한 결과, 농업위협요소로 농지부족을 꼽은 생산자는 2순위 1.1%로 매우 적었으나, 한살림 농업살림 과제 항목에서는 농지보전운동을 꼽은 생산자가 1순위 3.5%, 2순위 3.5%, 3순위 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농지부족에 대한 위협보다 농지보전운동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일반 관행농지는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보전되어야 할 농지를 친환경인증 농지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됨

V-27. 회원님은 우리나라 농업을 어렵게 하는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래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FTA 등 농업개방 확대 ②농업 생산비 증가 ③영농자금 압박
 ④잘못된 농업정책 ⑤일손 부족 ⑥판로확보 어려움
 ⑦농지 부족 ⑧농가부채 증가 ⑨후계인력 부재
 ⑩구제역 등 가축질병 ⑪가뭄/홍수/태풍 피해 ⑫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⑬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⑭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⑮조수 피해 ⑯ 기타()

VI-38. 한살림의 농업살림을 위한 과제 가운데 회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번호를 적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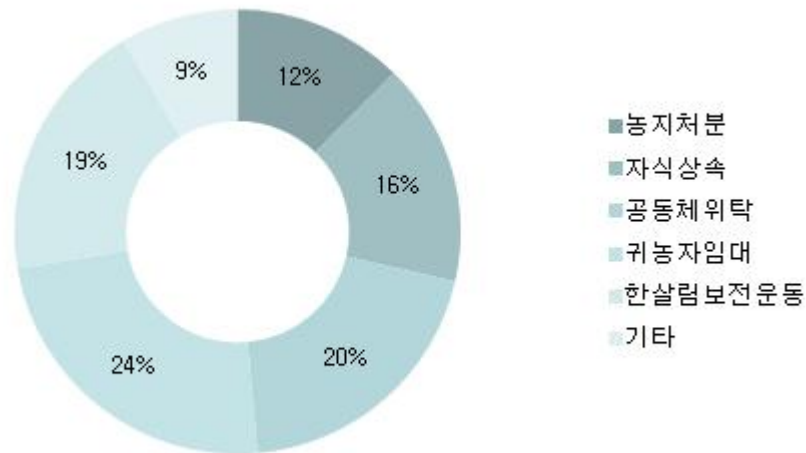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적절한 생산비 보장 ② 도농교류 활성화 ③ 지역순환농업 육성
 ④ 소비 회원수와 공급량 증대 ⑤ 생산 안정을 위한 기금 확충 ⑥ 생산·소비회원 교육 강화
 ⑦ 물류의 효율화 ⑧ 자주 인증 확대 ⑨ 사료자급률 증대
 ⑩ 중소농·가족농 육성 ⑪ 후계인력·귀농지원 ⑫ 우리씨앗 보존 활동
 ⑬ 한살림 농지 보존 활동 ⑭ 공공급식 등 외부사업 확대 ⑮ 생산자 복지 확충
 ⑯ 생산·출하기준 완화 ⑰ 기타 ()

- 생산자의 은퇴계획, 후계자 여부를 살펴보면, 평균 13.5년 뒤 은퇴할 계획으로 평균 나이인 57.3세를 감안하면 약 71세에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후계자 유무 여부의 경우 36.2%가 자식 등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후계자가 없는 경우 은퇴 후 농지 활용 계획을 분석해 보면, 귀농자 임대료가 가장 많은 24%이며, 다음으로 공동체 위탁과 한살림 농지보전운동 활용이 각각 20%와 19%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자식상속이 16%, 농지처분이 12% 등으로 조사됨
 - 한살림 농지보전운동 활용에 5명 중 1명의 생산자가 참여할 의향을 갖고 있어 한살림 연합 차원에서 농지보전 운동을 전개할 경우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농지공유를 통한 농지보전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농지보전운동보다 적극적이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응답으로 비교될 수 있는 공동체 위탁에 응답한 생산자도 농지보전운동 응답자와 비슷한 수치로 공동체별 농지공유제도 도입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한살림 생산자의 은퇴 후 농지활용계획



VI-36. 회원님은 앞으로 몇 년 뒤에 농업에서 은퇴하실 계획이십니까? ()년 후

VI-37. 농업에서 은퇴하신 후 지금의 농사를 넘겨 줄 후계자가 있으신지요? ()

- ① 있다 (있다면, 누구입니까? : _____) ② 없다 (37-1로)

37-1. (위 문항 ②번 응답자만 해당) 지금의 농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농지를 처분하겠다 ② 도시에 있는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③ 한살림 공동체/작목반의 공동경영을 위탁하겠다 ④ 귀농자에게 임대 하겠다
 ⑤ 한살림이 농지를 보전할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면 한살림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⑥ 기타 (_____)

2) 한살림 농지보전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계분석

- 먼저 은퇴후 농지활용계획과 관련 항목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농지활용계획과 큰 상관관계를 갖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항목 중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이는 항목으로는 영농

규모로 나타남

- 관련 항목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상관계수 0.706인 친환경농업 시작 시기와 한살림 가입시기로 분석되었음

<표 3> 한살림 생산자의 특성과 은퇴 후 농지활용계획의 상관관계 분석

	나이	농사 시작 시기	친환경 농업시작시기	한살림 가입 시기	영농 규모	유기 면적	무농약 면적	저농약 면적	관행 면적	은퇴 계획	농지 활용 계획
나이	1										
농사시작시기	-0.71	1									
친환경농업 시작시기	-0.24	0.178	1								
한살림 가입시기	-0.33	0.216	0.706	1							
영농 규모	-0.22	-0.06	-0.1	0.109	1						
유기 면적	0.033	-0.24	-0.04	-0.09	0.503	1					
무농약 면적	-0.17	0.045	0.096	0.372	0.411	-0.1	1				
저농약 면적	-0.01	-0.07	-0.1	-0.07	0.202	-0.07	-0.08	1			
관행 면적	-0.16	0.036	0.221	0.17	0.365	0.169	0.053	-0.06	1		
은퇴계획	-0.63	0.386	0.204	0.273	0.19	0.044	0.048	0.054	0.178	1	
농지활용계획	0.054	-0.04	0.015	0.016	0.132	0.052	0.088	0.064	0.097	-0.02	1

비고 : 농지활용계획의 설문 선택 문항이 정성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정량적인 관련문항(나이 등)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농지신탁 참여의향을 기준으로 하여 정량적 척도를 다음과 같이 산정

1점 : ① 농지를 처분하겠다 ② 도시에 있는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⑥ 기타

2점 : ④ 귀농자에게 임대 하겠다

3점 : ③ 한살림 공동체/작목반의 공동경영을 위탁하겠다

4점 : ⑤ 한살림이 농지를 보전할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면 한살림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 한살림 농지보전 운동참여 의향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사이의 특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항목은 나타나지 않음

- t-검정의 경우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기 위한 분석으로 집단 1은 농지 처분, 자식상속, 임대, 기타를 응답한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 2는 공동체 위탁과 한살림 농지보전 운동 활용에 응답한 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집단별 특징이 구별되는 항목으로는 농지규모 ($P(T \leq t)$ 양측 검정 0.0682)와 농업시작연도($P(T \leq t)$ 양측 검정 0.0812)로 나타남
- 즉, 영농규모가 크고, 농업시작이 빠를수록 한살림 농지 보전운동 등 농지 신탁에 적극적일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앞에서 분석한 상관관계 분석과 비교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인 농지규모와 어느정

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 4> 한살림 생산자의 농지규모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 검증

F-검정: 분산에 대한 두 집단			t-검정: 이분산 가정 두 집단		
	집단1	집단2		집단1	집단2
평균	11663.59375	16774.90244	평균	11663.59375	16774.90244
분산	115762855.1	237248803.1	분산	115762855.1	237248803.1
관측수	64	41	관측수	64	41
자유도	63	40	가설 평균차	0	
F 비	0.487938626		자유도	65	
P(F<=f) 단측 검정	0.005237182		t 통계량	-1.85463389	
F 기각치: 단측 검정	0.630962448		P(T<=t) 단측 검정	0.034092672	
			t 기각치 단측 검정	1.668635976	
			P(T<=t) 양측 검정	0.068185343	
			t 기각치 양측 검정	1.997137887	

<표 5> 한살림 생산자의 농업시작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 검증

F-검정: 분산에 대한 두 집단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		
	집단1	집단2		집단1	집단2
평균	1987.245902	1981.878049	평균	1987.245902	1981.878049
분산	238.2551913	211.8597561	분산	238.2551913	211.8597561
관측수	61	41	관측수	61	41
자유도	60	40	공동(Pooled) 분산	227.6970172	
F 비	1.124589189		가설 평균차	0	
P(F<=f) 단측 검정	0.350602162		자유도	100	
F 기각치: 단측 검정	1.637251825		t 통계량	1.761483956	
			P(T<=t) 단측 검정	0.040606441	
			t 기각치 단측 검정	1.660234327	
			P(T<=t) 양측 검정	0.081212882	
			t 기각치 양측 검정	1.983971466	

4. 관련 연구 분석

- 관련 연구는 국내에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도입시기인 2000년대 중후반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0년을 중심으로 몇 년간 공동체토지신탁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최근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음
- 조홍식은 「공유신탁이론과 지구공유지에서의 적용가능성」(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2호, 1999)에서 미국의 공유신탁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지구적 자산에 적용가능성을 검토
- 조명래는 「한국의 자생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평가」(지역사회개발연구, 제27권 1호, 2002)에서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시작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등장 배경과 사례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한계점을 제시
 - 관련 사례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대전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용인 대지산 살리기 운동, 태백 변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운동을 소개
 - 시사점으로 신탁을 설정시 이를 항구적으로 지키기 위한 제도(보전을 위한 농지 취득의 법제화, 취득 토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수용 억제 등) 마련이 시급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환경부, 2004)는 기존 국내외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공공유산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국민신탁 사례, 미국의 공공신탁 사례, 호주의 주단위 공동신탁 사례, 일본의 고베제언 등을 비교하여 고찰하고 있음
 - 취득재산에 대한 제한을 풀고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신탁재산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신탁유지비를 확보
 - 공공유산신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잠금장치를 둘 수 있고 개발법 등에 맞설 수 있는 대항력을 규정
- 김홍상은 「농지은행 제도 도입 관련 주요 검토과제」(농촌경제 제27권 1호, 2004)에서 2005년 10월부터 국내 시행된 농지은행의 필요성과 그 도입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농지은행의 주요 필요성으로 농지시장의 안정화 도모, 기존 영농규모화 사업의 한계 극복, 유휴농지의 체계적 관리, 다양한 농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지의 공적 관리,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지원 등을 제시
 -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으로 기금 조성 관련 세제 혜택, 타용도 개발의 제한 등이 필요

- 고문현은 「환경보호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신탁이론」(공법학연구 제7권 4호, 2006)에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을 개관하고, 공공신탁이론의 확대를 위한 이론적 근거 및 도입시 기대효과에 대해 서술
-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06)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셔널 트러스트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
 -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소유 토지의 공유화 촉진 및 매입토지의 적극적·계획적 관리방식의 운용이 필요
- 공동체토지신탁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전은호의 「해외 공동체토지신탁제도의 동향과 시사점」(국토정책브리프 제392호, 2012), 김동길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안으로서의 공동체토지신탁(CLT) 소개 및 금융 관련 이슈 검토」(한국주택금융공사, 2013) 등이 있음
 - 주로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주거공간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제3장 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관련 법·제도

1) 농지 관련 법·제도¹⁾

가. 주요 농지제도의 변화와 내용

-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자작농체제 구축
- 1972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보전법) 제정 : 전용허가제도 도입
- 1980년 헌법 개정 : 소작 금지,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의 임차 및 위탁경영의 허용
-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시행 유보, 1990년 시행령 제정)
- 1987년 헌법에 경자유전원칙 규정
- 1992년 농지전용부담금제 도입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 1994년 농지법 제정(농지 관련 법 종합화)

<표 6> 농지제도 관련 법률과 체계

	농지법	헌법	농업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농지소유	○	○	○		
농지이용	○	○	○		
농지보전	○	○	○	○	
농지전용	○	○		○	
농지정비	△		○		○
농지조성					○

출처 :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자료

1)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고로 정리하였음.

나. 농지 소유·이용 제도

- 농지개혁법 제정(1949), 헌법 개정(1987), 농지법 제정(1994) 등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 준수라는 농지의 소유·이용 관련 기본 이념과 원칙 정립
 -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Land-to-tillers Principle)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농업기본법 제19조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 농지법 제6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두어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법 제8조),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게 하는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제도 등 사후관리제도를 둬(법 제10조)
-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등에 따라 경쟁력 제고, 경영체 육성, 농촌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농지소유 허용 범위 확대
 - 현행 법에서는 이농·상속에 의한 농지소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등 비농업인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어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1990년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 2002년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미만의 농지소유 허용,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등
 - 2005년 농지은행 제도 도입, 2006년 개인이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
 - 2009년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업무집행 이사 중 농업인 비율 1/2에서 1/3로 완화)

다. 농지임대 제도

- 임대 허용 농지
 - 농지법 시행(19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 상속농지 및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시 소유 농지(1ha)
 -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규모가 2ha 미만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 질병, 징집, 취학,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3월 이상의 국외여행, 교도소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농지
 - 고령 은퇴농가의 소유 농지(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나, 주말·체험영농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농지
 -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농지
 - 농지이용증진사업²⁾시행계획에 따라 임대하는 농지 등
- 건국 후 농지개혁으로 90% 이상의 농지가 농업인 소유 형태였다가 이농·상속에 의한 농지소유, 비농민의 불법적 농지소유 등의 증대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비율이 꾸준히 증대하여 2013년 약 50%의 농지가 임대차(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실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기 곤란한 상태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매년 약 5~8만ha의 농지가 거래되고(2004, 2005년은 연간 약 11만ha 거래), 중복 거래를 고려하더라도 약 절반의 농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라. 농지보전·관리 제도

- 1960년대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지전용 증대, 도시근교농지의 스프롤화(sprawling), 농업생산환경의 악화 문제 발생
 - 1972년 농지보전법 제정으로 농지보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 1972년 ‘농지보전법’에도 불구하고 우량농지의 감소가 지속되자 1975년 농지보전법 전면 개정으로 ‘절대농지’ 지정을 법정화함
 - 절대농지 전용시 국무회의 심의제 도입
 - 농지전용에 대한 ‘농지조성비’ 부과 제도 도입
-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공포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용’ 제도 도입(圈域別 농지보전·관리 방식 도입)
 - 1991년 농지전용부담금제도 신설
 - 1992년 농지의 약 50% 수준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마. 농지전용허가제도

- 1980년대까지는 1972년 제정된 농지보전법에 의해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다가 1980년대 후반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

2) 농업경영개선 및 농지이용증진을 위해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농지의 집단화, 공동작업의 확대 추진하는 사업

이 본격화되면서 1989년 이후 농지전용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

- 1989년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전용제도 도입
-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절대농지(1ha미만→3ha미만), 상대농지(6ha미만→15ha미만)의 전용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
- 1990년 농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절대농지 200평 미만, 상대농지 450평 미만의 전용권한을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에 위임함
- 일본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시·정·촌장)에게는 위임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위임(1998년까지 2ha 미만, 최근 4ha미만)

○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확대

-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20ha까지는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1ha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에게 이양됨

바. 농지 관련 세제

① 재산세 : 저율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군 외 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함
- 시 지역 중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표 7> 농지 관련 재산세

구 분			과세대상
군 지역 농지 (광역시의 군 지역, 도농복합병 시의 읍면지역 포함)			분리과세 (면적제한없음)
시 지역 (특별시, 광역시 포함)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종합합산과세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외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 법인·단체 소유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아래는 분리과세대상(0.07%)임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소유하는 농지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함
-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1990년 5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며 1990년 6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포함)

②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 8년 재촌 자경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 농지의 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결해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
- 경작을 위하여 자경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은행 8년 이상 임대위탁시 위탁 기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면 혜택을 받음(2011년 시행)

2) 농업법인 관련 법 · 제도

가. 근거 및 성격

-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민법상 조합,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설립주체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 없음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의 범위는 유사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지 소유는 모두 가능

-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농지법 제2조3호)

○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의 기본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임
-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표 8>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관련 규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 요건	○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 (미충원 시 해산 사유)	○ 농업인 1인 이상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
성격	○ 협업적 농업경영체 ○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 기업적 경영체 ○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택일)
운영 방법	○ 대표자는 농업인이어야 함 ○ 조합원 1인 1표	○ 대표자는 비농업인도 가능 ○ 출자지분에 의함
사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지 소유	○ 소유 가능	○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 세제 지원

① 소득 관련 법인세

- 농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하여 전액 면제되며, 농업소득 외의 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 : $12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 수} \times (\text{사업연도월수}/12)$
 - 농업회사법인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
-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임
 - 농업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이 되지 않음(일반 과세 대상)

②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및 초지를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면제
 - 단, 출자한 농업인이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시 세액을 추징
 - 농지와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³⁾ 적용받음(조특법 제66조제7항)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기타소득 제외) 중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부과되지 않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기타소득 제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③ 부가가치세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3) 개인이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④ 지방세법 관련 세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2년 이후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

3) 신탁 관련 법·제도

가. 공익신탁

① 정의 및 주요 내용

-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⁴⁾인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3월 공익신탁법(담당부처 법무부) 시행
-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요됨
 - 고액 기부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공익법인 설립’은 허가나 등기 등을 갖추기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고, 설립된 이후에도 공익사업 외에 법인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다액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
 - 공익신탁 인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익신탁은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됨
 - 일반 기부금품은 모집자의 파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목적이 다양할 경우 기부한 사람의 의지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법무부가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공익법인의 경우 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수탁자가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신탁재산을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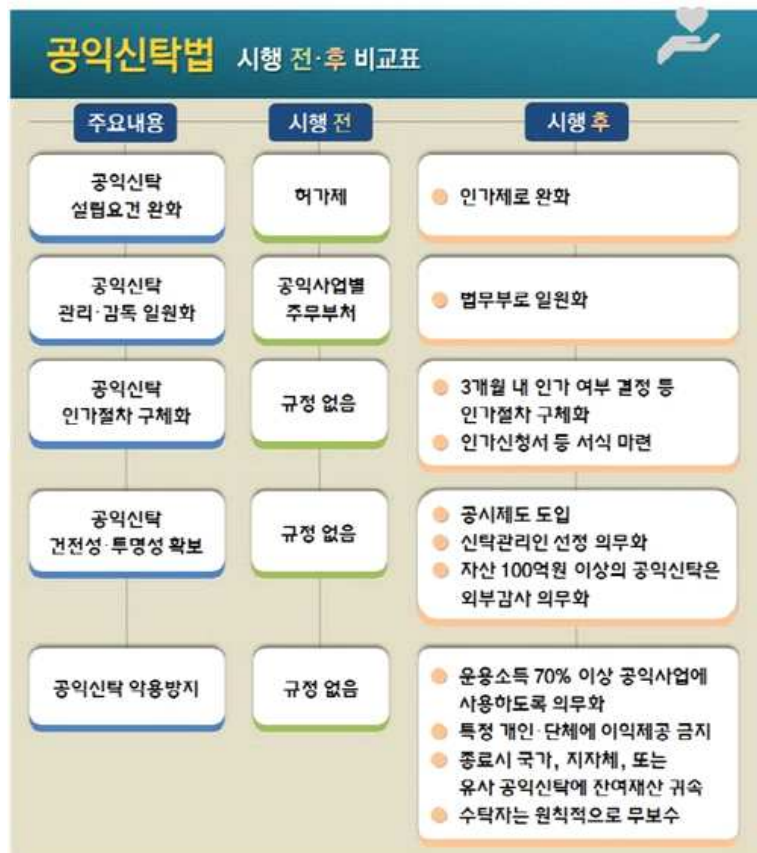
4) 신탁이란 소유자(위탁자)가 특정인(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 또는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익신탁을 증여나 상속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

○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⁵⁾

- 미국에서는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이라고 하며, 자선수익기여신탁(Charitable Lead Trust, CLT)과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의 2종류가 있는데, 기부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제상 혜택이 크고, 기부자와 가족의 생계보장이 가능하며, 은퇴-상속 플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자선신탁이 활성화
- 일본의 경우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공익신탁 수탁건수는 505건, 수탁고잔액은 596억 엔이며, 기부처와 급부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학금 지급, 자연과학기금조성, 교육진흥, 국제협력/교류촉진, 사회복지, 예술/문화진흥, 도시환경정비/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탁이 조성

<그림 5> 공익신탁 제도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2015. 3. 18)

5) 위키피디아 참조

② 관련 세제 혜택

- 원금을 기부할 경우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 가능(법인세법 제24조)
-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15%(3천만 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4)

③ 공익신탁 설립 사례

-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제1호)
 -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의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곰 인형도 함께 전달
 - 참여자 :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직원 중 희망자
-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공익신탁(제2호)
 -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독립유공자 공훈선양사업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 및 교육 지원 등
 - 참여자 : 일반 국민
- 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제3호)
 - 공익단체인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세계시민학교(교장 한비야)의 세계시민 양성 사업을 지원
 - 참여자 : 한비야(1호 위탁자)와 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제4호)
 -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치료비 등을 지원
 - 참여자 : 분당서울대병원(1호 위탁자)과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제5호)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가족 등 법무부의 정책고객들의 생계비 등을 지원
 - 참여자 : 법무부(천사운동기금)

④ 농지신탁 관련 내용(부록 참조)

- 공익신탁은 금전 외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기부 가능
- 제2조(정의)에서 '공익사업'은 다양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농지신탁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다음과 같음
 -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사회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법 시행령 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국민신탁

① 정의 및 주요 내용

- 국민신탁은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담당부처 환경부 및 문화재청)」 시행
- 보존재산의 목록, 일반재산의 현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보존재산을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함
 - '지정기탁재산'을 도입하여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산은 기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보존협약'을 도입하여 국민신탁법인이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대리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성실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그 토지 등을 대차하여 직접 보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정단체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치토록 함

② 관련 세제 혜택

- 개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공제
-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

③ 국민신탁 설립 사례

-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2000년 설립)
 -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기증과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함
 - 신탁재산 :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최순우 옛집, 동강 제장마을 농지 및 건물 등
- 자연환경국민신탁(2006년 설립)
 - 국민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을 국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및 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를 활용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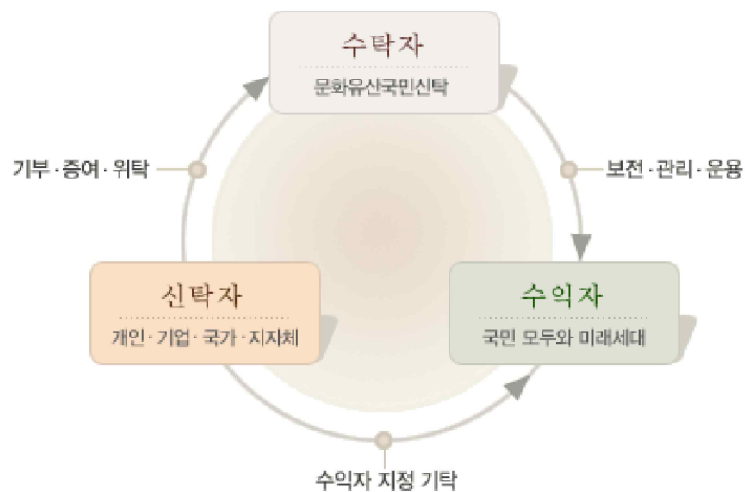
를 보전·관리하고자 함

- 신탁재산 : 진천 미르숲, 부산 낙동강 둔치도, 무주 허병섭 목사 장원, 담양 송강 정철 장원 등

○ 문화유산국민신탁(2006년 설립)

- 국민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전·관리·활용하여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의 촉진과 문화유산 보전·관리하는 데 목적을 둠
- 신탁재산 : 이상 옛집 터,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및 주변농지, 송용억 가옥 등

<그림 6>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 체계



출처 : 문화유산국민신탁 홈페이지

2. 국내 사례 분석

1) 한살림 DMZ 평화농장

가. 일반 사항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129 등 3,300평을 2015년 7월에 국유지 입찰로 보유
- 방식 :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을 설립하고 대표자는 김상기(천지보 은공동체 대표)

나. 배경 및 현황

○ 배경 및 목적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지를 확보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기여한 농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소비
- 국토해양부에서 장단반도 상류 부근에 홍수조절을 명분으로 4대강 방식의 준설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막고 임진강 유역의 보전하고자 함
- 통일 및 평화를 위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참여 현황(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등) : 아래 기관 및 조합원이 3억 2천만 원의 출자금 모집

-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 소비자생협(서울, 고양파주, 경기서남부)은 조합원이 출자한 경우라도 기관 출자 방식

농사로 일구는 평화

한살림DMZ평화농장의 주인을 찾습니다

임진강과 맞닿아 있는 장단반도 일대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한살림DMZ평화농장이 조성됩니다.
지금 출자에 참여하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한살림DMZ평화농장은,

- 고양파주지역 도·농교류의 거점을 마련합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경기남부 아남에 편중되어 있어 도·농교류를 위해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한살림DMZ평화농장을 통해 우리 지역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다 가깝고 즐겁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 친환경 생산 기반을 넓혀갑니다.**
벼와 잡곡 등의 식량작물을 한살림 생산·출하 기준에 맞게 재배합니다. 한살림 천지보은공동체 생산자들이 번갈아 농사짓고, 생산한 농산물은 한살림으로 출하됩니다. 나아가 한살림DMZ평화농장은 귀농인들의 실습지이자 주유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생산단지로서의 도약을 꿈꿉니다.
- 사라져가는 농지와 임진강을 지킵니다.**
농업살림의 첫걸음은 사라져가는 농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살림DMZ 평화농장은 2014년 3천 평의 농지구입과 5천평의 농지임대를 시작으로 3년 내에 구입농지와 임대농지를 합하여 1만평의 농지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는 임진강변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임진강 하천 정비사업' 임진강 준설 공사에 대한 반대지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평화를 배웁니다.**
농장 조성 예정지인 장단반도는 임진강에 면한 민통선 이북지역입니다. 분단의 상징 DMZ에 조성되는 한살림DMZ평화농장은 교육장을 겸한 체험 시설을 지어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통해 생명과 평화를 위한 배움의 장이 됩니다.

<그림 7> 한살림 DMZ 평화농장 소개

- 천지보은공동체, 한살림 가공생산자는 조합원 출자 방식(농지보유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제도상 농업인이 1/10 이상 출자)
- 기관 대표 및 조합원 약 20여 명이 발기인으로 결합

○ 운영방법

- 출자한 조합원에게 현금배당계획은 없으며, 수확물 일부를 제공
- 2016년까지 민통선 안에 2천 평의 농지를 추가 구입하고, 5천 평의 농지를 임대받아 모두 1만 평 규모의 친환경 농지를 조성하고 민통선 밖에 1천 평 농지를 장기 임대받아 각종 도농체험시설을 만들 계획임

다. 애로사항 및 시사점

○ 농지공유에 대한 견해 및 애로사항

- 농지보전운동을 위한 농지신탁 제도도입시 지역의 사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제도적 함의 및 시사점

- 농부의 농지에 대한 접근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농지신탁의 경우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

2) 한살림 논 지키기(한살림성남용인)

가. 일반 사항

-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747-12, 13번지(피내뜰 도정공장 옆) 논 2,938m²(약 8백 평)
- 방식 : 피내뜰 영농조합법인 소유

나. 배경 및 현황

○ 배경 및 목적

- 2013년 ‘땅 한 평 사기 운동’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한살림성남용인 내부 논의를 거쳐 2014년 한살림 전체차원의 ‘농지지키기 운동’으로 제안
- 이후 한살림연합에서 농지지키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되어오던 중 2015년 홍천에서 고령(77세)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생산자회원의 논 8백 평(시가 8천만 원)을 생산자가 매각하기로 하자, 한살림성남용인에서 조합원들에게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해 특별출자 운동을 전개
- 매각 위기에 처한 한살림 생산농지 매입 자금을 쌀 선수금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출자

반응으로써 유기농지를 지키고, 도농 생산소비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운동이 진행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자 함

○ 참여 현황(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등) : 현재 한살림성남용인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자금을 모으고 있음

- 기간 : 2015년 10월 17일(토) ~ 11월 30일(월)
- 출자액 : 20만 원/1구좌
- 총 목표액 : 8,000만 원(20만 원 * 400 구좌)
- 출자방식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약정서 작성 후 외내돌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약정서와 함께 현금 출자

○ 운영방법

- 매년 연말 쌀(종류는 백미, 현미, 오분도미 중 선택) 20kg으로 3년간 상환
- 본인 희망시 지정 기부처 또는 희망 기부처에 기부 가능(변경은 불가함)
- 출자금 관리 : 외내돌 영농조합법인

<그림 8> 한살림성남용인의 한살림 논 지키기 운동



다. 애로사항 및 시사점

○ 농지공유에 대한 견해 및 사업추진시 애로사항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포함하여 한살림 차원에서 적극적인 농지보전운동의 전개가 필요
- 한살림 농지보전 운동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으나, 뫼내뜰 영농조합법인이 3년간 출자자에게 직접 쌀을 보내기에 한살림 성남용인의 매출 감소 등 지역 단위 조직에서 관련 사업 추진시 애로점이 존재

○ 제도적 함의 및 시사점

- 지역단위에서 농지보전운동 추진시 한살림연합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
- 농지 소유주인 뫼내뜰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농지매각, 또는 담보시 농지보전운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3) 홍성 토지평화기금⁶⁾

가. 일반 사항

○ 대상 위치 : 홍성군 홍동면 인근에 대상 농지를 마련할 계획임

○ 방식 : 5천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고, 현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 학교법인(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이 마련될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가정

나. 배경 및 현황

○ 배경 및 목적

- 현재 우리 사회는 소수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사람이 부자가 되며, 농사짓고 싶은 사람은 땅값이 비싸서 못 하고, 농사를 지어도 지대를 계산하면 남는 게 없고, 농지는 점점 줄어들고, 논밭을 물려받아 농사지으려는 사람은 없는 총체적인 모순이 토지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토지신탁 기금을 마련
- 기금 조성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 5천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고, 이후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임
- 모인 기금으로 공동체가 소유하는 유기농업 농지를 확보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6) 본 사례의 운영주체는 미정인 상태로 본 기금의 관계자인 정민철 이사(홍성 젊은협업농장)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식 중의 하나인 학교법인(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농지공유의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기 위한 것임.

이에게 임대

- 참여 현황(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등)
 - 기금조성자 : 홍순명 밝막도서관장의 제자 김계자 씨가 타계하면서 남긴 2천만 원과 젊은협업농장 교보교육대상 상금 1천만 원, 풀무학교 일요집회원 박유순 씨 1천만 원, 그리고 홍순명 밝막도서관장이 1천만 원을 내놓아 조성
- 운영방법
 - 모아진 토지평화기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은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관리하면서 농지를 매입하여 관리 및 임대
 - 농업의지가 있으나, 농지가 없는 이에게 임대하되,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임대하여 조직적·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다. 애로사항 및 시사점

- 농지공유에 대한 견해 및 사업추진시 애로사항
 - 공동체토지신탁 기금 모집에 홍성지역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학교법인이 기금 및 농지를 운영시 임대수익의 재생산을 통한 농지확보보다 학교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압박받음
 - 특히, 학교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재산(농지)의 처분 요청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기금관리가 어려움
- 제도적 함의 및 시사점
 - 농업학교법인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농지를 쉽게 매입 또는 기부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 농지구입용 지정기부 등을 통해 기금을 확대 가능
 - 단, 학교법인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할 경우, 농지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홍순명 선생으로부터 듣는 토지평화기금 : 공동체 소유 ... 가족농이 유기농사 짓는다

홍동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공동체 건설운동의 사상과 철학적 바탕이 됨은 물론 실무까지 앞장서는 홍순명(78·사진) 홍동밖뜰도서관장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다. 가칭 토지평화기금으로 불린 공동체토지신탁 기금이다. 토지를 둘러싼 각종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했다.

“우리 사회는 소수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사람이 부자가 되며 농사 짓고 싶은 사람은 땅값이 비싸서 못 하고, 농사지어도 지대 계산하면 남는 게 없고, 농지는 점점 줄어들고, 논밭을 물려받아 농사지으려는 사람은 없고... 총체적인 모순이 토지에서 비롯됩니다.”

2005년 7월 15일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분포 통계를 공식 발표했다. 개인 토지를 총인구의 상위 1%가 51.5%, 상위 5%가 82.7%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0명의 땅부자들이 1인당 평균 115만3000평(평균 5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었다. 해방 후 처음 밝힌 토지 편중도는 그후 더 심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제주도도 중국인들 토지의 소작인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올해 4월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내 농지의 21%가 외국인 소유로 파악됐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농지 면적이 줄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에도 지난 5년 동안 263ha의 논이 전용 등으로 사라졌다. 홍성군 통계에 의하면 2010년 1만 263ha의 논이 올해 10월 현재 1만60ha로 줄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토지 불로소득 문제에 제대로 대처한 적은 거의 없다. 토지보유세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역대 정부 중 몇몇은 보유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한 정부는 없다. 유기농업의 확산과 유기농지 보전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은 미국에 여러 사례가 있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인디안라인 농장과 케어테이커 농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역공동체 지원에 기반한 농업단체를 만들어 지역 모금, 지자체와 연방정부 지원금까지 합해 농지를 사들여 공동체신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순명 관장의 꿈과 준비는 상당히 오래됐다.

“오래 전(1982년) 풀무학교 주옥로 선생은 장학기금, 의료사업, 농민복지 등 지역발전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우표 100만장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드라큐마운동이라고 이름붙여 국내외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100만장을 모았으나 돈이 안됐습니다. 그때부터 지역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을 모아 공동체가 소유하는 유기농업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 북해도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황폐한 간척지를 사들여 자연을 보존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일과 비슷합니다.”

홍 관장의 토지평화기금 조성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제자 김계자 씨가 타계하면서 남긴 2000만 원과 이번에 젊은협업농장 교보교육대상 상금 1000만원, 풀무학교 일요집회원 박유순씨 1000만 원, 그리고 홍순명 관장 자신이 1000만 원을 내놓아 조성된 내용임이 확인됐다.

홍 관장은 그러나 이는 종잣돈이며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자유연구소 이성영 연구원은 “공동체토지신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자, 환경보호단체, 지방정부, 생협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용도전환이 쉬워 땅값이 올라가므로 농지 개발가치를 제거해 개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농지법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신문, 2015년 11월 5일자, 이번영 기자 bunyung@hsnews.co.kr)

4)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및 농지

가. 일반 사항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24-4 고택 외 인근 13개 농지 등
 - 보전자산 :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로 2000년 3월 지정) 650여 평
 - 지정기탁자산 : 인근 농지 5,200여 평
- 신탁 방식 : 2011년 7월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손인 정용수(전국귀농운동본부 전 본부장, 현 소농학교장)씨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증여

<그림 9>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전경



출처 : 문화유산국민신탁 홈페이지

나. 배경 및 현황

- 배경 및 목적
 - 인근 개발압력에 대해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관련제도보다 상위에 있는 문화재 보호제도를 이용
 - 이후 유산상속시 재산분할이나 종손의 개인사정으로 대상지 보존이 어려울 경우 동래정씨 동래군파 자손들의 고향이 사라질 수 있어 이를 보전
 - 문화재로써 농업공동체에 기반한 농촌문화의 보전
- 참여 현황(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등)
 - 정용수(동래정씨 동래군파 종손) 외 준비속
 - 문화유산국민신탁

○ 운영방법

- 농지를 보전하고, 동래군파 종손이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증여
- 현재 종택은 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실로, 인근 농지는 소농학교 학습장으로 활용
- 특히, 소농학교를 통해 농촌공동체 복원 및 관련 문화 배양, 농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 애로사항 및 시사점

○ 농지공유에 대한 견해 및 애로사항

- 문화(culture)란 농업(agriculture)에서 기원된 만큼 그 바탕이 되는 농지도 문화재 차원의 이해가 필요
- 증여시 운영방법의 조건에 대한 계약이행협약의 미비로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장기적 운영에 따른 신탁 취지 훼손의 우려
- 종택의 경우 문화재 보존자산으로 지정되어 개발압력을 피할 수 있지만, 인근 농지의 경우 지정기탁재산으로 개발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함

○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민간 신탁단체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법정 단체인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증여하였는데, 민간에서도 신탁재산 보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특히, 농지보전을 위한 신탁시 그 외 법제를 통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5)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강화 매화마름 서식지 및 동강 제장마을 농지

가. 일반 사항

○ 위치 및 면적

-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약 912평
- 동강 제장마을 농지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제장마을 약 5,200여 평

○ 신탁 방식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 2002년 시민모금(2,640㎡ 매입) 및 기증(369㎡: 전 소유주 사재구 님)
- 동강 제장마을 농지 : 2004년 시민모금(약 3억 원)

<그림 10> 동강 제장마을 동강사랑 및 농지 전경



나. 배경 및 현황

○ 배경 및 목적

- 강화의 경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식물 ‘매화마름’의 훼손 위험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함
- 1990년대 초,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의 이유로 정부가 계획한 영월군 일대에 대규모 댐건설에 대하여 수물예정 지역의 보전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영월댐은 백지화되었지만, 현재 동강은 외지인의 투기와 각종 건설 사업에 의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억제하고자 함
- 특히, 제장마을 농지의 경우 대형주차장으로 개발될 예정지였는데, 이를 시민모금으로 매입

○ 참여 현황(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등)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및 기증자

○ 운영방법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총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고, 농지 소유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2012년 1월에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소유지 중 농지를 포함하는 4개 지역을 보전·관리
- 영농조합법인 정관에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확보한 농지를 영구 보전한다”, “출

자되거나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취득한 농지 및 임야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농지의 ‘영구 보전’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강화 매화마름 서식지는 2008년 10월, 람사르협약(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에 의해 논습지로서는 국내에서 유일의 람사르 사이트가 되어 보전, 관리 되고 있음
- 또한, 자산확보 이후 친환경 매화마름쌀을 생산하는 유기농 단지화
- 동강계장마을의 경우 2005년 시민성금을 통해 ‘스트로베일’ 공법을 이용한 친환경 생태건축물인 ‘동강사랑(東江畝廊)’을 건립하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동강사무소로 운영

다. 애로사항 및 시사점

○ 농지신탁에 대한 견해 및 애로사항

- 농지의 소유를 규정하는 ‘농지법’은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투기하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면서, 특정 법인이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유를 어렵게 함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개발법으로 인해 ‘영구 보전’이 어려울 수 있음

○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농업 본래의 목적과 농지 영구 보전이 목적이면, 현재 매각을 제한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추가 수당을 제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함
- 개발 사업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토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제로 수용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6) 경기도 ‘Land Share’ 사업

가. 일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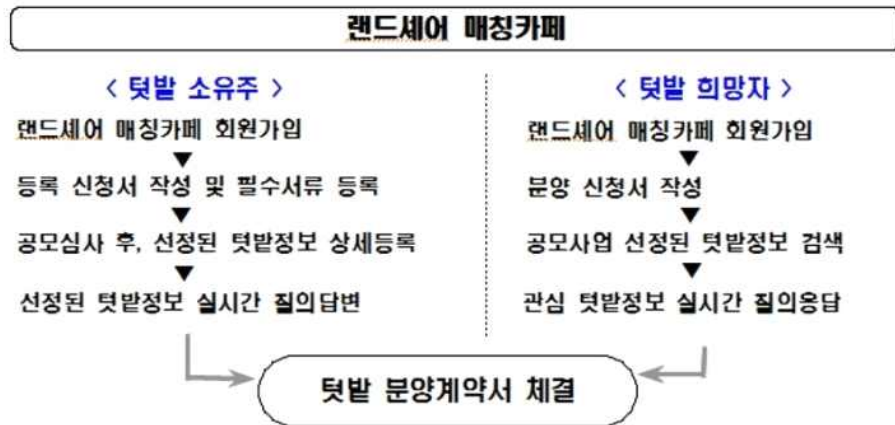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내 6개 지역 100~500평

-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76-32 소재 120평
- 의정부시 산곡동 550 소재 300평
-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330 소재 150평
- 평택시 고덕면 궁리 505-2 소재 150평

-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496-1 소재 185평
- 고양시 일산동구 산향동 산 109 소재 200평

○ 방식 : 텃밭 소유주와 텃밭 희망자를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모집하여 연결

<그림 11> 랜드쉐어 매칭 방식



출처 : 경기농림진흥재단 랜드쉐어 매칭카페

나. 배경 및 현황

○ 배경 및 목적

- 도시근교 유휴지를 가진 텃밭(토지) 소유주와 텃밭경작을 희망하는 자를 상호 연결하는 '랜드쉐어 매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텃밭 조성 및 이를 통한 공동체 확산을 도모
-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 내 시민을 주축으로 한 자율적 농지 확보

○ 참여 현황(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등)

- 텃밭소유주 15명이 신청하여 6명의 토지 선정
- 텃밭참여자 60여 명이 신청하여 47명에게 분양
- 경기농림진흥재단

○ 운영방법

- 2015년 6월 경기도 내 텃밭소유주와 참여자를 모집하여 매칭 후 2015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 1년간 임대
- 텃밭 소유주와 텃밭 희망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각각 재단에 텃밭 분양 상생지원금 신청
- 텃밭소유주 지원사항 : 1평당 5천 원 이내(100평 기준 50만 원이내 / 총 500평 이

내)로 토지개간, 농기구 보관함, 안내 표시판 제작 등

- 텃밭경작자 : 개인은 5평~10평 이내(1가구 4인 기준), 단체는 10평~25평 이내로 분양하고, 1평당 2만 원 이내(분양대금, 토지 임대료, 모종 및 퇴비 구입비, 농기구 구입비 등 포함) 지원
- 텃밭 경작자는 지원금 중 1평당 1만 원을 텃밭소유주에게 텃밭 임대료로 지불

다. 애로사항 및 시사점

○ 애로사항

- 도시농업 특성상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러한 도시내 농지 확보가 어려움
- 텃밭참여자의 경우, 분양받은 텃밭에 대해 접근성 및 편의시설 등 불만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 사업의 '미개척된 도시농지 확보'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려됨

○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타 지역에서도 문의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아 내년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농지 확보 및 텃밭참여자 매칭과 관련되어 지역 내 전문적 단체와 협업이 필요
- 텃밭참여자 신청시 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
- 한살림 등 소비자 조직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서 도시 내 유휴지 보유 조합원을 발굴하여 텃밭 참여의지가 있는 조합원과 매칭을 통해 조합원 활동 활성화에 기여 가능
- 단, 친환경적 농업생산의 어려움, 도시농업 참여를 통한 농업의 이해 확대, 귀농·귀촌 전 농업 체험, 조합원 간 공동체성 확보 등 도시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생산자연합회 등의 전체적 동의가 선행됨

3. 외국의 사례 분석

1) 공동체 토지신탁(CTL, Community Land Trust)⁷⁾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 19세기 말 정치경제학자 Henry George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지가치의 공유를 주장했고, Ebenezer Howard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서 영구적으로 환수하는 전원도시를 제안
- 이어 Arthur Morgan, Ralph Borsodi 등 사상가들의 이론적 영향과 함께, 인도의 Land gift 운동, Village gift 운동 등이 공동체토지신탁의 주요 모델이 됨
 - 1950~1960년대 간디의 후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에 많은 지도자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조금씩 모인 땅을 이들에게 공급하게 됨
 - 그러나 땅을 경작할 도구와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땅을 주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마을이 땅을 소유하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일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고안한 결과, 마을이 땅을 소유하고 임대를 통해 가난을 해결
- Henry George의 이론적 영향을 받아 CLT가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은 Slater King과 Robert S. Swann⁸⁾이 Albany Georgia에 New Communities, Inc.를 설립
 - 5천 에이커의 농장을 구입하여 흑인 농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공동체토지신탁의 효시
- 이와 같이 CLT의 시초는 공동체 농지확보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의 주거복지와 관련되어 많은 연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73년 Swann은 공동체경제학회(Institute for Community Economics: ICE)를 설립해 CLT를 알리고 지원하는 데 힘써오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257개의 CLT가 존재
 - 1992년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Section 213에 의해 법제화

나. 제도 일반

- 최초 설립자인 Swann은 공동체토지신탁의 개념을 공동체, 토지, 신탁으로 설명

7) 본 내용은 지방정부와 공동체토지신탁의 파트너십(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체토지신탁 연구회, 2008)국토정책 Brief 제392호(국토연구원, 2012)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8) E. F. Schumacher Society 설립자

- 공동체(Community) : 신뢰를 통해 구축된 모든 인류의 공동체라는 광의적 의미와 토지신탁 내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공동체라는 협의적 의미를 모두 포함
- 토지(Land) : 상품으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공동체에 의해 '소유'되고 개인에 의해 '사용'될 대상으로 봄
- 신탁(Trust) : 공동체의 토지에 대한 신뢰 또는 책무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토지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맡겨진 공유물로서 사적소유권에 기반을 둔 부동산신탁 등과는 구별
- CLT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토지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지역사회 조직, 비영리기구
 - 소유권 분리(토지 vs. 건물) 및 토지 임대(99년간)
 - 지불가능성(affordability)의 영구적인 보장(재판매 규제)
 - 실거주자 중심의 관리·운영, 지속적인 토지 확보와 유연한 개발 등
 - 의사결정 거버넌스(거주자, 지역주민 및 전문가, 공공기관 대표자 등의 동등결정구조)
- 공동체 토지신탁은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기구로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토지의 가치를 공동체가 공유
 - 토지를 임대해 주어 토지의 사유화를 막고, 토지 위에 짓는 시설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에게 보장
 - 그동안 CLT가 적용된 분야를 보면 지불가능한 저렴주택 공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오픈스페이스 보존, 소규모 지역사업 개발 및 지원, 농업·산업·상업적 개발 등도 포함하고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활용되며 농촌지역에서 유기농지보전에 도 활용
- CLT의 역할은 토지구입을 시작으로 마케팅, 토지임대 및 재판매, 자금 확보, 주택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실시, 구매자 모집, 교육 및 입주자 선정, 금융지원, 지역서비스 및 주택 수리, 모니터링,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 등으로 포괄적
 - 주택과 관련된 CLT의 일반적인 개발절차를 살펴보면, 비전 수립에서부터 완공된 건물의 판매와 임대 및 부동산자산의 지속적인 관리까지 11단계를 거침

- CLT는 다음 표와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현재 CLT의 주요 사업이 도시의 주거복지와 관련되어 있어 주택에 관련된 언급이 많지만, 농지공유 제도 검토시 시사하는 바가 큼

<표 9> 공동체토지신탁의 장·단점

장점	- 토지를 공공자원으로 봄으로써 재정투자의 재순환 및 보호 기능을 강조 - 중산층 이하 주거권 보장 및 저렴한 가격으로 삶터 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 - 개발이익 추구를 차단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보장 - 주택구매자에 대한 금융교육 및 재무관리 상담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 주거복지, 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행정비용 감소 - 낙후지역·슬럼화지역 개선 및 도시재생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 -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이나 환경보호 등과 결합 가능 . 공동체 토지소유를 기반으로 견고한 자치규범 적용 가능
단점	- 사유재 등 토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적용에 부정적 - 재산증식이 제한됨으로써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 -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세금회피 수단으로 오용 가능 - 한 개인이나 특정목적만을 지닌 주체에 의해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 - CLT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 및 갈등 가능성 내재

출처: Institute for Community Economics(<http://neweconomicsinstitute.org/>)

다. 농지 관련 사례⁹⁾

- 공동체 토지신탁은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과 연계하여 농지를 보존하는 활동을 진행
- 지역공동체 기반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데, 소비자 회원들은 농업 생산자가 계속 농사지를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자는 회원들에게 농업 생산물을 보내는 구조임
- ① 인디안라인 농장
- 미국 메사추세츠 주 사우스에그리먼트에 위치한 6만 8천796m²(17에이커) 규모의 인디안라인 농장은 1986년부터 선구적으로 CSA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
- 1999년 인디안라인 농장의 농부인 엘리자베스킨과 알렉스 소프는 뉴에코노미스인스티튜트(NEI)라는 CLT 단체와 더네이처설번시(TNC)라는 환경단체와 함께 인디안라인 농장의 농지를 매입
- 북아메리카의 초기 CSA 농장을 보존하고 유기농 농장을 유지하고 농장과 인접한

9) 사례 1과 2는 『살림이야기』 제34호(2015년 3월호, 이성영)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습지를 보전하고 소규모 농업을 하는 농부들에게 적절한 가격의 농지를 제공

- 구체적으로 농장 매입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단체인 TNC는 농지 개발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개발제한권을 5,513만원(5만 달러)에 매입하고, NEI 산하 CLT기구인 서던 버크셔 CLT는 1억 7천만 원(15만 5천 달러)에 농장 전체를 산 뒤, 농부들에게 건물 을 6천77만 5천 원(5만 5천 달러)에 사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CLT가 영구적으로 소유
- CLT는 농부들에겐 99년 동안 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농장의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농법을 현금성 작물 중심으로 농사하려는 유흥 에서 벗어나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

② 케어테이커 농장

- 미국 메사추세츠 주 윌리엄스톤에 위치한 케어테이커 농장의 창립자인 스미스 부부 는 농장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 CLT단체인 윌리엄스톤루러랜즈파운데이션 (WRLF)과 메사추세츠 주정부, 케어테이커 농장에 새롭게 참여할 농부인 돈 자사다 와 브릿지 스파과 함께 케어테이커 농장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
- 케어테이커 농장이 영구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은 WRLF가 갖고, 농장은 메사추세츠 주의 농업 보전 규제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인디안라인 농장과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토지 99년 임대권을 가지며, 농장 안 의 주택과 농업시설 등을 매입해 소유
- 케어테이커 농장의 토지 매입비용은 CSA 회원들이 주도한 지역 모금과 WRLF의 기 금, 윌리엄스톤 시의 공동체보존기금, 메사추세츠 주의 개발권 판매 수입 등으로 충당

2) 영국의 국민신탁

가. 도입배경 및 목적

- 1894년에 회사법들(the Companies Acts)에 의하여 유한보증 회원들의 책임 아래 (with a liability of members limited by guarantee) 비영리 협회(an Association not for profit)로서 창설된 것이 영국 국민신탁의 시초임
- 1907년 제정된 국민신탁법(the National Trust Act)이 1937년과 1939년에 개정되 면서 이후 아래와 같은 법들에 관련 조항으로 들어가 있음
 - 1931년 재정법 (the Finance Act)
 - 1947년 도시및농촌계획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 1947년 농업법(the Agriculture Act)
 - 1949년 국립공원 및 전원접근법(the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 1968년 전원법(the Countryside Act)
 - 1981년 야생및전원법(the Wild and Countryside Act)
 - 1984년 농업지주법(the Agricultural Holdings Act)
 - 1990년 환경보호법(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 주요 목적으로 첫째, 자연보전과 환경개선, 둘째,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쾌적함과 기회의 제공, 셋째, 자연경관유산의 보전을 통하여 광범위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을 지닌 그리고 같은 목적에 이바지하는 공동토지(open land)(건물을 포함한다)를 소유, 임차하여 장기적으로 관리를 책임지는 데 있는데, 이는 주요 자산들의 사적 소유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자본화(social capital)·공유화에 바탕을 둔 국민운동이라 할 수 있음

나. 제도 일반

- 국민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름
- 신탁물의 양도불가 : 제도 도입 후 100여 년 동안 자산처분은 3~4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득이하게 양도를 하거나 처분을 해야 할 경우는 의회로부터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 신탁자산의 엄격한 보존관리 : 유산으로 영구히 보전되기 위해 국민신탁법에 따라 확보한 자산의 가치를 유지관리하는데, 2005~2006년 지출한 자산관리비(routine property running cost)는 1억4천만 파운드(약 2천5백8십8억 원)로 연간 총지출(3억3천7백2십만 파운드, 약6140억 원)의 41.7%를 차지
- 토지와 건물들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한, 또 이를 영구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1907년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회(Council), 집행위원회, 회원총회, 지방조정관, 사무국
 - 주요 조직은 본부(Head Office)와 지역사무소로 구성되며, 본부에서는 조직운영과 위원회 관리, 국가적 정책결정과 국가적 이슈대처, 법과 행정, 토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신탁 방식은 1937년 법개정을 통해 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로 인정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회비납부, 모금 및 기부, 유산 기증, 직접 취득, 사용권 획득 등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국민신탁을 운영
- 회비 납부 : 정규회원이 내는 회비가 신탁형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2005~2006년 사이 회원 340만 명이 낸 회비(membership fee)는 총 9천2백만 파운드(약 1700억 원)로 연간 수입(총 3억3천7백2십만 파운드, 약 6140억 원)의 27.8%를 차지
 - 모금 및 기부(appeals and gifts): 대상을 정해 놓지 않고 시민들의 성금과 기부를 받

는 비지정기탁 방식과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해 자산이나 돈을 받는 지정기탁방식이 있는데, 2005~2006년 사이 모금 및 기부액은 1천1백만 파운드(약 202억 원)로 연간 수입의 3.2%를 차지

- 유산 기증(legacies) 및 헌납 :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산을 유산받거나 헌납받아 이를 신탁 자산화하는 방식으로 2005~2006년 사이 유산(legacies)으로 받은 액수는 3천9백2십만 파운드(약, 721억 원)로 연간 전체수입의 11.6%를 차지
- 직접 취득(acquisition) : 필요에 따라 보전을 위한 자산을 직접 취득
- 사용권의 획득 : 시설,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의 이전이 없이 해당 자산을 보전적으로 이용하고 유지하는 약관 혹은 협약(covenant)을 맺어 관련 사업을 추진

다. 사업 대상 및 현황

- 신탁을 통해 보전할 사업대상은 해당 건물, 토지, 환경 등이 훼손의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하며, 그 훼손이 개인이나 정부에 의해 예방될 수 있거나 해결될 수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가 보전하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2006년 현재 약 25만 ha(2,500km²)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영국 토지의 2.7%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토지소유자임
 - 주요 경관지역 : 전체 보유면적 중 1/3인 영국 국립공원 1호인 '호수지역(Lake District)'
 - 친환경 전통 농장 : 700여 개의 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전통농법을 유지하면서 농촌의 생태환경과 경관을 유지
 - 문화재 : 사적 건물, 성, 정원, 전통적인 산업시설, 교회, 선사 및 로마시대 유물지역 등에 대해 2만 5천여 채의 건물(이 중 5천 채 집과 오두막), 166개의 역사적인 건물, 19개의 성, 160여 곳의 정원, 49개의 교회 및 성당, 35개의 선술집 및 여인숙, 9곳의 선사 및 로마시대 유적, 73곳의 경관공원, 100만여 점의 소장품 등을 보유
 -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 : 영국 해안선의 17% 해당하는 575마일을 소유

라. 관련 사업

-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유산'을 공유화하는 방안이라는 지침 아래 '보전하면서 즐기는(conserving and enjoying)' 것을 지향하는 규정은 1937년 법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관련 사업들은 아래와 같음
- 시설 개방과 이용 : 소유한 공원, 성, 정원, 고택들을 회원이나 일반시민들에게 개방

하고 관람·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용

-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숙박, 관광, 시설대여 등이 있는데, 소유한 대저택, 성, 전통가옥, 정원 등을 호텔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며 시설대여 사업으로 활용
- 2005~2006년간 관련 시설의 입장객이 5천만 명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입장수익은 1천2백4십만 파운드(약 228억 원)로, 연간 재정수입의 3.7%를 차지
-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보전의식의 고취 : 홍보 및 선전 외에 단체의 활동상을 널리 소개하는 것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음
 - 홍보는 뉴스레터, 브루셔, 홍보 이벤트, 책자,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
 - 학생,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용 : 에이콘 캠프(Acorn Work Camp), NT 청년극장(Young National Trust Theater) 등
- 자연·문화유산의 가치 극대화 : 보유한 자연·문화유산을 캐릭터화하거나, 이를 각종 전서적으로 출판
 - 이를 담당하는 사업주체로 'NT 엔터프라이즈(National Trust Enterprise)'가 설립되어 2005~2006년 사이 수익금은 4천6백6천만 파운드(약 857억 원)로 연간 재정수입의 13.8%를 차지하여 단일 항목으로는 회원 회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3) 호주와 미국의 공공신탁

가. 호주의 공공신탁

① 도입배경 및 목적

- 호주 내셔널트러스트는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호주의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비정부 기구로 정부의 보전의지 부족으로 인한 자연문화유산의 훼손을 우려한 시민들에 의해 1945년에 New South Wales State에서 처음 설립
- 현재 8개 주(6개 주, 2개 특별구)에서 각각의 내셔널트러스트와 전국적 협회조직인 호주 내셔널트러스트 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음

② 관련 제도

- 연방정부 차원의 관련법은 없으나, 호주 국가 시스템에 맞추어 각 주별로 내셔널트러스트 관련 법령의 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 사업대상, 관리체계, 운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뉴사우스웨일 주는 1990년에 National Trust of Australia Act(NSW)를 제정
 - 빅토리아 주의 경우 자연신탁(Trust for Nature)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문화유산은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담당하고, 자연자산은 자연신탁(Trust for Nature)에서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

- 타스마니아 주는 1975년에 National Trust of Australia Act(Tasmania)이 제정되어 운영

- 자산의 처분정책 : 각 주의 내셔널트러스트 관계 법령에서 처분규정이 명기될 경우, 그 법의 내용을 따르지만 특별한 관계 규정이 없을 경우 내셔널트러스트 연방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National Trust)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공자산의 처분정책(National Policy for the Disposal of Public Property)을 준용(법률적인 효력은 갖지 않음)

③ 사업 대상

- 자연자산보다는 문화자산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자연자산은 문화유산과 관계가 깊은 정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보전대상으로는 빌딩(건축물), 오래된 정원, 가구 등 골동품, 그림, 전통의상, 차량 또는 관련 도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앞으로 영국처럼 문화자산에서 출발하여 점차 자연자산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예비 지정되는 분류(Classification)에는 상당부분의 경관자연, 생태우수지역 등의 자연자산이 포함되어 있음

④ 관련 사업

- 전국적으로 309개가 넘는 자산들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180개는 대중에게 공개되며, 매년 100만 명의 방문객들이 탐방
- 300개의 유산을 관리·보전·교육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7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 전체의 내셔널트러스트 회원은 7만 5천 명에 달하며, 이 중 가장 큰 규모로는 3만 명의 회원이 있는 빅토리아주 내셔널트러스트를 들 수 있음
- 호주 내셔널트러스트가 신탁자산 관리에 있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교육부문인데 이는 학생, 지역주민, 시민들에 대하여 내셔널트러스트 자산의 중요성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 동참할 기회로 활용
 - 교육 및 홍보는 각 주별 또는 신탁사이트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주로 지역사회의 중년 여성층이나 할머니에 의해 수행되고, 입장료는 성인 1인당 7~10달러 정도임
 - 호주의 대표적인 신탁자산은 빅토리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멜본 감옥과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에 소재한 Golden Pipe Station이 유명

나. 미국의 공공신탁

- 19세기 후반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을 통하여 발전된 공공신탁 이론은 환경자원의 공공성과 정부의 의무를 명시

- 미국의 내셔널트러스트는 The National Trust Preservation Act(1966), International Revenue Code 501(c)(3), the Beautiful Act(1990) 등을 토대로 다양하게 구성·운영
- 미국의 대표적인 내셔널트러스트는 1949년 의회의 공식승인을 얻은 비영리 사설단체 역사보존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외에 다음과 같음
 -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 Georgia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 Scottish Heritage USA Inc.
 - National Tree Trust
 - Trust for Open Land
 - The Land Trust Alliance
 - American Farmland Trust
- 1997년 말까지 미국 전체적으로 1,400개 이상의 토지신탁이 존재하고, 20여 곳의 역사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취득은 역사보존기금, 대륙붕 석유개발기금, 회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로부터 재정보조금이 풍부
- 주요활동으로 기금조성, 조사 및 보존활동, 교육 및 계몽활동, 헤리티지 관광 장려 등이 이루어지고, 재산양도도 허용됨

4) 일본

가. 고베제언(1976)을 통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 일본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령은 없으나, 개별법을 통해 보전지역의 설정과 매입, 신탁재산의 세제혜택(소득공제, 손비처리, 상속세 비과세 등) 등을 부여
- 40여 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단체가 지역적으로 활동 중으로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는 1964년 고도 가마쿠라(鎌倉)가 택지조성으로 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사)가마쿠라풍치보존회의 토지매입 활동으로 시작
 - 이를 계기로 1966년 일본정부는 ‘고도보존법’을 제정하고, 가마쿠라풍치보존회가 선정한 후보지 일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비로 매입
- 홋카이도(北海道) 시야리군(斜里郡) 시레도코(知床) 국립공원내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막기 위해 1977년부터 ‘시레도코100m² 운동’을 전개하였고, 1978년 ‘斜里町자연경관보전림설치조례’, ‘시레도코국립공원내토지 보전기금조례’ 등을 제정하여 자연

경관보전림 시설을 영구히 보전

- 1984년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혜택 기반을 마련하여 트러스트 운동이 활성화

나. 농지보유화합리화법인¹⁰⁾

-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은 한국의 토지은행과 비슷한 제도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가 있음
 - 도도부현 농업공사 : 법 제5조에 의거하여 197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주체는 도도부현 이사원 또는 기부재산출자자인 민법법인
 - 시정촌 및 농협 : 법 제6조에 의해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주체는 시정촌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
 - 시정촌 농업공사 : 법 제6조에 의거하여 199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실시주체로 시정촌 이사원 또는 기부재산 출자자인 민법법인
- 관련사업으로 다음과 같음
 - 농지매매사업 : 이농농가, 유휴농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차입하여 규모확대농가에게 양도
 - 농지매도신탁사업 : 농가 등이 농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신탁받는 것과 아울러 당해 농가에게 신탁농지의 평가액 일부를 무이자로 대부
 - 농지임대신탁사업 : 농가 등에게 신탁받아 농지를 임대
 - 농업생산법인 출자육성사업 : 농업생산법인에게 농지현물출자, 농기계정비현금출자 등을 지원
 - 연수사업 : 농업기술, 경영방법 등에 관한 연수 실시
- 특정농업법인 및 특정농업단체제도
 - 농업경영체(후계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농지인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담당할 특정농업법인이나 단체를 지정
 - 시정촌이 실시하는 농업경영 기반강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이 농용지 이용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의 합의를 통해 농지를 이용
 - 특정농업단체 및 특정농업법인은 농용지 이용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10) 일본의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 운영실태조사 보고서(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4. 사례의 비교·분석

가. 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비교·분석 및 시사점

① 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비교·분석

- 집중형 : 전국적인 조직과 근거법에 의거해 모든 트러스트 자산을 동일한 법적 지위와 관리의 대상으로 조직하며, 위탁자, 즉 회원의 종류와 자격, 회비 및 기부 조건과 혜택 등도 모두 동일한 근거법에 의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예를 들 수 있음
- 개별형 : 지역별·사안별로 트러스트를 결성하고, 트러스트별 회원, 재정확보 및 운용, 지원제도 등을 운용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그 사례임
- 혼합형 : 근거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등이 설립되어 있으나, 비영리단체도 결성되어 사안별로 회원 및 재정 등을 확보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음

② 시사점

- 토지소유에 의한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론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공유지보전협회의 운동론을 발전적으로 극복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단체가 아닌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이념화
- 신탁대상의 확대와 이에 수반하는 법제·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정책보다 앞서 있었고,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법제화
 - 정부로부터의 재정원조를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억제하고, 정부의 특수 법인화하는 것을 경계하여 시민조직으로써 기본 이념과 활동에 충실
- 보전대상을 일관해서 토지, 건물 및 이에 부수된 동산에 한정함과 동시에 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자산의 수용기준을 차츰 엄격히 하여 트러스트 자산의 질적 향상에 성공
- 거대 조직화된 ‘내셔널트러스트’와 지역주민을 연계하는 중간조직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지역 차원의 활동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 초기의 내셔널트러스트 회원이 중상류 계층에 의한 자선의 단체적인 것으로부터 대중화시대의 단체로 무리없이 이행

<표 10> 주요 국가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특징

구분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입법체계	특별법주의 The National Trust Act(1907, 1937, 1939)	특별법주의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1966)	일반법 주의 고베제언(1976)	특별법 주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유형	국민신탁	공공신탁	지역조례	국민신탁
창립연도	1896년	1949년	1968년	1994년 이후
조직성격	자선단체, 사업체 운영	비영리 시설단체	재단/사단법인 형태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설립목적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 경관지, 건축물을 매입하여 미래세대가 영구히 보존토록 함	자연경관지 및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뛰어난 환경을 보존	아름다운 자연과 중요한 문화재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호·관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보호
주요기능	지원업무, 조사연구보전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환경교육,보급개발, 자원봉사등	기금조성, 조사 및 보존활동, 교육 및 계몽활동, 헤리티지 관광 장려	지원업무, 조사·연구·보전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환경교육·보급개발, 자원봉사·지도·육성	보전·관리활동, 지원업무, 교육
대상자산	보전토지, 역사문화유산, 보존해안선, 건물	역사유적 자연, 토지, 나무	토지, 건물, 철도, 차량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등
주요사례	2,480km ² 토지 960km 해안선 200채 건축물)	20개 역사유적 public land	카마쿠라 고도 시레도코국립공원 사이다마 녹지 등	강화매화마름군락 동강제장마을 군포 동래정씨 종택
재원	회원회비, 유산기부금, 직접투자, 임대수익사업	역사보존기금, 대륙봉 석유개발기금, 회비	회원 기부금	회원금, 후원금, 증여와 유산, 정부보조금
정부보조	없음	풍부한 재정보조금	없음	경비 일부 보조
재산양도	불허	허용	규정없음	원칙적 불허
성공요인	사회적 자본화, 자발적 기부재산과 자원봉사, 법 제정, 포괄적 활동영역 구축, 조직의 네트워크화	풍부한 재원조달, 효과적인 지원활동, 세금혜택, 다양한 법제도, 헤리티지 관광 장려	헌신적인 자원봉사, 시민들과 언론의 효과적 지원	법제기반 마련

출처 :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2006)의 내용을 현재에 맞게 수정

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써 국내에서 법인의 농지 확보시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일반 법인의 농지취득이 제한적인 한국(경자유전의 원칙)과 일본(경자유전¹¹⁾)의 원칙이 주요 국가임
- 학교법인 : 농업학교의 경우 교육용으로 농지를 구입 및 보유할 수 있으며, 현물 기부나 기부금도 운용할 수 있어 기관이나 단체가 학교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농지공유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 단,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학교법인이 기금 및 농지를 운영시 임대수익을 학교운영비로 전용될 수 있고, 학교법인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할 경우, 농지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국민신탁 :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탁방식으로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국가가 관여하는 재단법인으로써 토지를 취득·증여받을 수 있으나, 농지에서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법인을 별도로 세워야 함
- 공익신탁 : 자선문화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 일찍이 시행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시행되어 현재 시작단계에 있음
 - 공익신탁법인이 농지 등을 기증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으로 농지 취득은 어려움
- 공동체신탁 : 토지의 사적 소유에 큰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 발달한 방식으로 토지공유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이라는 목적이 농지신탁과 가장 크게 맥락이 닿아있음
 - 하지만, 국내 관련 규정이 없어 공동체신탁 조직의 농지 취득이 어려움

11) 일본은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서 ‘경자유전(經者用田)’ 원칙을 수용하였는데, ‘경자유전’ 원칙이란, 농사짓는 이가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후 대기업 등이 농업에 참여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

<표 11> 농지공유 수단의 사례별 특징의 비교

구분	농업법인	학교법인	국민신탁	공익신탁	공동체신탁
제도	일반법	일반법	특별법, 일반법 조례 등	일반법	일반법
유형 및 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학교법인	사업체, 비영리, 재단법인 등	공익신탁법인	사업체, 비영리, 재단법인 등
설립 목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교육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보호	각종 공익사업의 활성화	토지 공유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
주요 사업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교육	보전·관리활동, 지원업무, 교육	법에 명기된 공익사업 및 관련 수익사업	토지의 소유 및 임대, 각종 사업
대상 자산	농지 및 관련시설	교육시설 및 토지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등	현금 및 현물	토지
재원	출자금	기부금(학교발전 기금) 및 현물	회원금, 후원금, 증여와 유산, 정부보조금	기부금 및 현물	후원금 및 현물
정부 보조	세제 지원 등	교육비 지원	나라별로 다름	세제 지원 등	자치단체 보조 및 세제 지원 등
재산 양도	허용	허용	나라별로 다름	불허	불허
주요 국가	한국, 일본	조사사례 없음	전 세계	미국, 일본, 한국 등	미국
주요 사례	한살림 DMZ 평화농장, 한살림 성남용인 논 지키기운동	현재 농지공유를 위해 학교법인을 이용한 사례가 조사되지 않음	강화매화마름군 락, 동강제장마을 군포 동래정씨 종택	세계시민학교신 탁, 난치성 치료 신탁, 법무부 천 사 신탁 등	인디안라인 농장 케이타이커 농장

제4장 농지공유 제도 활성화 방안

1. 사례분석을 통한 농지공유 모형

가. 시사점을 통한 농지공유 모형의 기본원칙

- 원칙 1. 농지의 절대적 보존 및 친환경농업의 실천
 - 지역환경 및 공동체, 농업기반을 보전
 - 개발가치를 제거함으로써 농지가격 안정화에 기여
- 원칙 2.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조직화
 - 토지신탁자, 생산자, 소비자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 중앙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참여
 - 단, 농지보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정부 직접적 개입 방지
- 원칙 3. 사회적 가치 및 운동을 포함하는 사업의 다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식량안보, 농업인 육성, 로컬푸드, 환경정책, 사회적 기업활동과 연계 등
 - 농지 임대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유지
- 원칙 4. 대상농지 확보시 생태성 보전을 기준
 - 농지신탁 대상지의 경우 유기농지를 우선적으로 확보
 - 개발압력으로 인해 농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보 대상화

<그림 12> 농지공유 모형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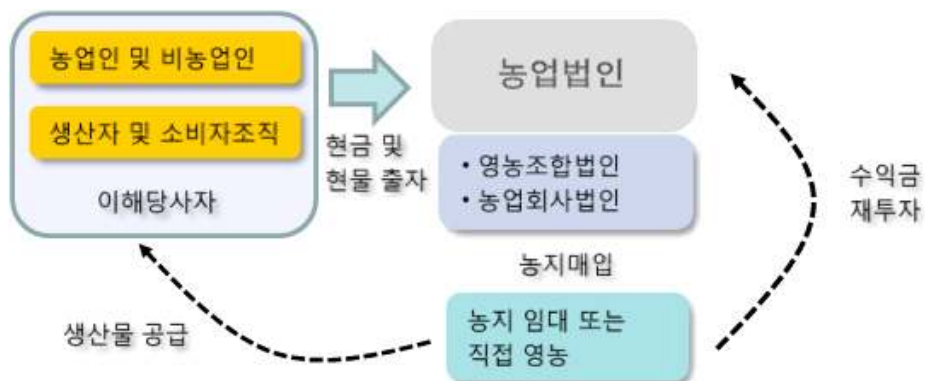
나. 농지신탁 모형 제시

-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서 농지 소유 및 농지 출자가 가능한 제도적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업법인과 공익신탁법인을 기본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함

① 농업법인을 이용한 지역단위 주도형

-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농지공유 방법은 농업법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음
 -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을 활용한 예로 한살림성남용인에서 소비자에게 출자금을 모집한 뒤 외내뜰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현물(쌀로) 출자자에게 지급
 - 한살림 DMZ 평화농장은 출자자들을 모아 새로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취득이 쉽고,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의해 각종 세제 혜택 및 영농자금, 농자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영농을 목적을 한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비농업인에 대한 각종 제한이 존재하여 농민이 아닌 이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이 유리함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가능하나,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 농업회사법인은 총출자액의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며,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 가능
 - 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만 참여하기에 전국적 규모로 출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움

<그림 13>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공유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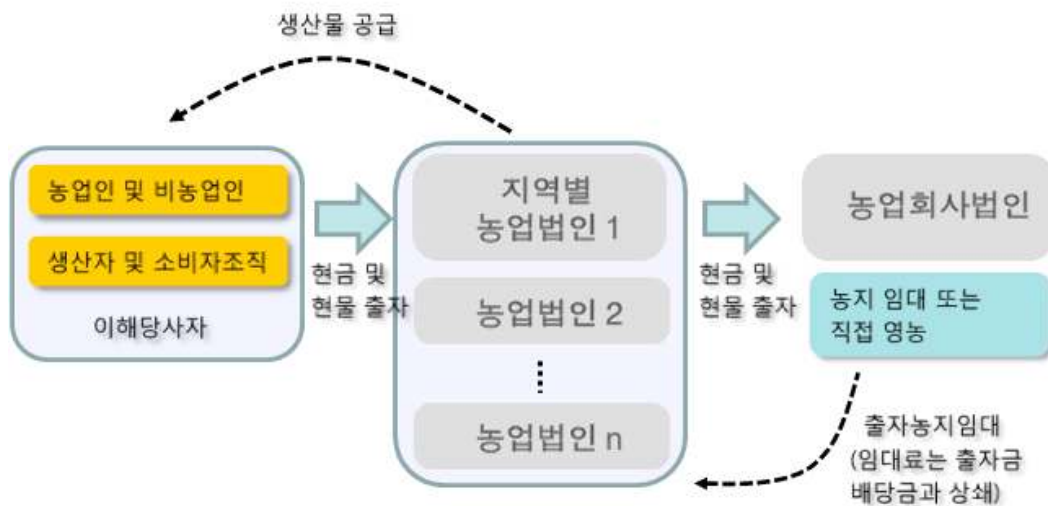
○ 지역 단위 추진시 규모의 영세성,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농지의 장기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지역 대 지역으로 확보된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규모의 영세성 및 타 사업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시 농지 보전이 어려움
- 생산자 회원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할 경우, 출자자의 상황(생활 악화, 상속 등)에 따라 안정적인 법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또한, 해당 농지가 국가나 지방정부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움
- 한살림 내 지역간 농지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시 각 조직마다 유사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등 효율성 제고가 어려움

②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업법인의 출자형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출자가 가능하므로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농업법인들이 한살림연합 차원에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규모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 농지신탁 영농법인의 영세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
 - 앞에서 기술한 농업법인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며, 지역간의 농지보전운동의 다양성을 존중 가능
- 농업법인에서 출자받은 농지를 다시 지역의 농업법인에 임대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여 출자자 등에게 생산물을 공급하도록 함
 - 임대료는 출자금 배당과 상쇄하여 농업회사법인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소유를 주요 목적으로 함
- 단점으로는 조직의 중복화, 출자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등이 있음
 - 조직이 커질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특성상 한살림 연합의 사업내용과 중복될 수 있어 정관 등에 사업내용을 적확히 명시
 - 출자한 농업법인의 상황에 따라, 출자금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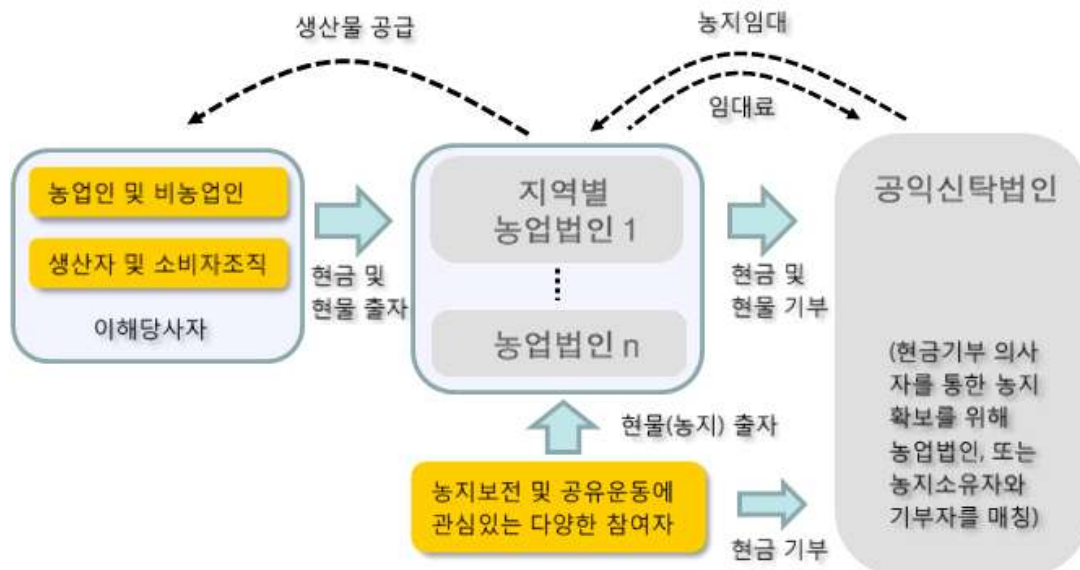
<그림 14>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법인이 출자하는 농지공유 모형



③ 공익신탁법인을 이용한 중앙주도형

- 현재 농지보전과 관련된 공익신탁법인의 설립 사례는 없지만, 관련법의 목적 및 내용상 설립이 가능한데, 한살림연합 차원에서 농지보전 공익신탁법인 설립시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규모화를 통한 안정성, 홍보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
 - 규모화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로 한살림 조합원 외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시행착오 등이 없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출자가 아닌 기부의 형태로 기부자의 개별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
 - 경영악화로 인한 농지 손실이 없고, 개발의 압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
 - 농업과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공익신탁의 선도사례가 되어 대내외적 홍보 효과 발생
- 주요 기부자와 기부방식은 다음과 같음
 - 앞의 한살림 관련 사례와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설립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 농업법인이 출자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
 - 한살림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소유한 농지
 - 기부자와 농지소유자를 매칭시켜 기부자가 구입한 농지
 - 그 외에 농지보전 및 공유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기부금

<그림 15> 공익신탁법인을 통한 농지공유 모형



- 기부금으로 농업 관련 시설 등을 마련하여 기부받은 농지와 함께 지역의 관련 농업 법인 등에 임대하고, 그 수익금으로 공익신탁법인의 운영 및 시설 재투자
 - 공익신탁법인 홍보, 조직 운영, 교육장, 농업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은 기부금으로 마련
 - 기부받은 농지와 함께 농업관련 시설을 함께 임대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 및 시설 재투자
 - 농업법인이 경작을 담당하게 하여 영농지원 혜택을 받도록 함
 - 농지보전을 위한 지역주도형 농업법인 설립시 다양한 지원사업도 진행
- 장기적으로는 한살림 학교법인을 세워 친환경농업 인재 양성과 농지보전운동을 함께 모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 가능
 - 학교법인은 건전한 재정상태가 유지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의 장점과 공익신탁법인의 기부금 운용의 장점 모두를 지니고 있음
 - 또한, 농업현장에 한살림 정신을 가진 올바른 영농인력을 배출하여 국내 농업의 대안을 모색하고, 풀무학교와 같이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가능
- 공익신탁법인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도 있음
 - 농지 등 현물 기부는 가능하지만, 기부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기에 기부자와 농지소유자와의 매칭 사업이 매우 중요
 - 농지관련 세제 감면, 영농자금 등 농업법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없음

<표 12> 농지공유 모형의 장단점 비교

유형	지역주도형	법인출자형	중앙주도형
조직 형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공익신탁법인 (학교법인도 고려 가능)
농지 소유	소유 가능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	소유 가능	소유 가능
장점	농지취득이 수월 각종 영농지원 혜택	규모화로 안정적 운영가능 각종 영농지원 혜택	규모화로 안정적 운영가능 기부자 상황과 분리
단점	비농업인 참여 한계 장기적 불안정성	출자자 이해관계 존재 조직의 중복화	기부금으로 농지취득 불가 영농지원 혜택 없음

2. 사업추진 방안

가. 농지공유 사업추진 방안

○ 본 사업추진 방안은 각 모형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였음

- 1단계 :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의향 조사를 통한 참여의사 분석
 - 향후 5년 내 은퇴 및 농지매각 의사가 있는 생산자 조사
 - 각 회원조직의 참여의사 파악 등
- 2단계 : 목표 수립 및 도입 배경의 구체화
 - 농지공유제도에 대한 의의 및 목표 수립
 - 조직 내 목표 및 배경의 공유
- 3단계 : 조직 구성 및 예산 책정
 - 전문인력 확보, 전문가 자문조직 등 구성
 - 조직의 법적 자격 취득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자료 확보 및 세부 전략과 사업계획 작성
 - 회원조직의 출자, 농지살림기금 마련, 개인 기부(후원) 등 예산마련의 다각화
- 4단계 : 농지신탁 홍보 및 참여자 확보
 - 생산자 회원 은퇴시 농지 출자 또는 기부 유도
 - 소비자 회원의 농지 상속시 기부 또는 출자에 적극적 참여 독려
 - 공익신탁법인의 경우 대외적 홍보를 통해 한살림 정신을 알림
- 5단계 : 이해당사자의 전과정 참여 유도
 - 출자자 또는 기부자에게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6단계 : 취득농지 등 자산에 대한 관리
 - 적정 생산자에게 농지 임대를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로 유도
 - 농지 활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외 세제 등 제반업무의 처리
 - 임대방식, 임대대상자 및 임대료 산정시 지속가능한 농지보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7단계 :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확보
 - 대상 농지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출자자 또는 기부자 추가 확보

- 한살림 귀농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조합원, 실무자, 활동가 등이 귀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사례분석을 통한 타 부문의 사업 방안 : 한살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랜드쉐어 사업

- 본 사업은 농지신탁 모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한살림 소비자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 내 및 인근의 유휴지나 농지를 대상으로 한살림연합 차원에서 추진 가능
 - 도시농업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농업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93.1%, 도시농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6.2%에 달함(서울특별시, 2013)
 - 하지만, 참여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도시농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주변에 텃밭이 너무 멀거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가 44.2%, 땅을 구하기 위해 신청해도 기회가 돌아오기 어려워서 15.5% 등으로 60% 정도가 경작지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농업을 통한 소비자 회원의 공동체성 회복
 - 소비자 회원들의 농업생산물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소비자 회원의 귀농시 사전 교육장으로써 도시농업을 활용
- 추진 방법은 앞서 사례로 소개한 경기도 '랜드쉐어' 사업을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

3. 연구의 성과 및 과제

가. 연구의 성과

- 최근에 관련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농지신탁의 도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 한살림 생산자 회원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농지보전 운동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
- 다양한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농지신탁 모형을 제시하였음
- 농지신탁 외에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한살림 조합원들의 조직화 방안을 모색

나.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6개월에 걸친 단기 과제로 진행되어, 한살림에서 농지신탁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음
 - 국내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였으나, 농지보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례가 적어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해외 사례의 경우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제한적임
 - 농지신탁제도의 도입 가능성, 모형 제시 등 큰 방향성은 제시하였으나, 실제적인 적용에는 내용상, 절차상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통한 참여 의사 분석
 - 한살림 DMZ 평화농장 및 한살림 성남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사업의 추진 결과 분석
 -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참고 자료

1. 문헌

- 고문현. 2006. “환경보호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공법학연구』 제7권 4호.
- 국토연구원. 2006.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
- 김금호. 2007. “우리나라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역사와 시사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제42권 461호.
- 김동길. 2013.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안으로서의 공동체토지신탁(CLT) 소개 및 금융 관련 이슈 검토」. 한국주택금융공사.
- 김정호. 2009. 「일본의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 운영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홍상. 2004. “농지은행 제도 도입 관련 주요 검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27권 1호.
- 전은호, 해외 공동체토지신탁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제392호, 2012
- 조명래. 2000. “새로운 시민환경운동으로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이해와 활용”,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1권 2호.
- 조흥식. 1999. “공유신탁이론과 지구공유지에서의 적용가능성”.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2호.
- 한국 논습지 네트워크 평가 교류회. 2014.
- 『살림이야기』 제34호. 도서출판한살림. 2015.
- 환경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2004.

2. 인터넷

- 경기농림진흥재단 랜드쉐어 매칭카페 <http://cafe.naver.com/landsharematching>
- 공동체토지신탁연구회 <http://iclt.tistory.com>
- 문화유산국민신탁 <http://www.nationaltrustkorea.org>
-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 <http://trust.go.kr>
- 아이쿱생협 블로그 <http://blog.naver.com/icoopkorea>
- 자연유산국민신탁 <http://www.trust.or.kr>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http://www.nationaltrust.or.kr>
- 한살림 <http://www.hansalim.or.kr>

부록

공익신탁법

[시행 2015.3.19.] [법률 제12420호, 2014.3.18., 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나.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마.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아.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자.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수등"이란 보수,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 요건)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의 글자를 사용할 것
3. 수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신탁법」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제22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의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信託管理人) 중에서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신탁법」,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탁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신탁관리인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신탁관리인과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7.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보유할 것
8. 사업계획서 및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가.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신탁관리인, 사용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신탁등"이라 한다)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신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투기적 거래, 고리(高利) 대부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라.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제11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바. 운용소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1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사.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을 것

9. 신탁행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

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필요한 인가·허가 등을 받았을 것

11. 해당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5조(인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가 조건)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인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사정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변경인가)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2.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3. 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4.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5.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법
6. 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변경신고)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변경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①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은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느 누구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인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중 금전은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금전(「신탁법」 제41조 각 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이 아닌 신탁재산을 신탁행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등"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등에 사용하는 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수탁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수탁자는 「신탁법」 제78조 및 제87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사무를 수탁자 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 지식이 필요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무
 2. 모금활동과 관련된 사무
 3.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보수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등과 해당 공익신탁의 재정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보수등을 정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제15조(회계의 구분)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① 신탁관리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와 제14조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수탁자등이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익신탁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과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① 제17조에 따른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등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제20조(합병인가) ①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 수탁자로부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
6.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경우
7. 제15조에 따른 회계 구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면 그 공익신탁은 종료하며, 그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신탁의 명칭에서 "공익"의 문자를 삭제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익신탁의 종료) 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을 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 최종 계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계산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3조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정한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신탁법」에 따른 귀속권리자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귀속권리자를 정할 수 없거나 해당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탁재산을 유사한 목적의 공익신탁등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귀속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신탁등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탁의 감독

제25조(감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때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시정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①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

관에게 속한다.

1. 「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 가.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 나.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 다.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 라. 「신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등기·등록 또는 그 등기·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신탁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를 허가할 권한
 6.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할 권한
-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

제4장 보칙

제28조(조세 감면 등)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신탁법」의 준용)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사용한 자
3.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장기차입한 자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탁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한 수탁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기간 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수탁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탁자
5. 제18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청구나 설명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수탁자
6.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탁자 또는 청산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부칙 <제12420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익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법」 제10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신탁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으로 본다. 다만, 해당 공익신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에 따른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취소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83조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을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106조"를 각각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⑥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각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제10장(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신탁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5.3.19.] [대통령령 제26147호, 2015.3.17.,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공익신탁의 명칭·신탁사무처리지(공익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며, 신탁사무처리지가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목적사업·수익사업
3. 수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위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6. 신청 당시 신탁재산의 총액 및 신탁재산의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
7.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8.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의 취지 및 한도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3.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납부·채납 관련 서류 및 수탁자의 조세납부·채납 관련 서류
4. 신탁계약서(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그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될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5.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위탁이나 기부를 받을 기간, 신탁재산이나 기부받을 금품의 종류 및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신청 당시 위탁받은 신탁재산만 해당한다)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8. 신탁관리인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및 선임승낙서
9. 공익신탁의 운영,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의 지정 등을 위하여 공익신탁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성명·주소·경력
10.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1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수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

1.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2. 고용관계에 있는 자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 ② 법 제4조제5호에서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신탁관리인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1. 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6촌 이내의 혈족
 - 다. 4촌 이내의 인척
 -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 마. 신탁관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바. 신탁관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2. 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신탁관리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 나. 신탁관리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 ③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로 본다.
- ④ 법 제4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신탁 관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신탁재산관리인

나. 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사용인·신탁재산관리인의 채권자

2. 법 제4조제8호가목에 따른 신탁 관계자의 특수관계인: 신탁 관계자(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사용인 또는 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 관계자"로 본다.

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인가 여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에 붙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인가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신탁계약서(신탁계약서에 변경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사업의 개시예정일 및 변경사업 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경력(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나.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및 조세납부·채납 관련 서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4.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되는 재원 조달 방법을 소명하는 서류

나.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기부금품모집·사용 계획서

5.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탁법」 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

6.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제7조(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신탁의 명칭

2. 위탁자

3.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

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한다)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공익사업에 따라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에게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사무
2. 그 밖에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로서 위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무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5.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6.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7.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제12조(외부감사 기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할 각 신탁의 명칭(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신탁사무처리지와 합병 후 신탁의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2.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공익사업등의 내용(합병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

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6.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 총액 및 한도

7. 신탁합병의 이유 및 합병계약일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계약서

2.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재산목록

3. 합병 후 신탁의 재산목록

4.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5. 합병 후 신탁의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다만, 합병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변동가액이 기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7. 합병 후 신탁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영 제5조를 준용한다.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이하 "보관수탁관리인"이라 한다)에는 법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보관수탁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보관수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선임된 보관수탁관리인에게 신탁재산으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 조건의 부과·취소·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무

1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감독에 관한 사무

15.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 승인에 관한 사무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서식) 법무부장관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26147호, 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②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③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 2009~2012 한살림 연구·활동 공모 지원사업 진행 경과

구분		연구자	소속	연구 주제
2009	개인 과제	김희경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에코맘(환경친화주부)의 속성 및 이의 형성 동인 탐구
		이동근	홍성 홍동면	농촌지역의 지역통화 활성화 방안: 충남 홍성군 홍동면 사례를 중심으로
		김단	온배움터	생태주의 운동의 대두 이후 '3세대 활동가'들의 실험적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연구 팀 과제	강시원 외	사)중랑천 사람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노원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
		신동철 외	연구소 마을, 녹색연합	지역을 변화시키는 자연 에너지: 마을 만들기의 새바람
2010	개인 과제	박준영	한살림원주	원주지역 대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 찾기
		김일영	자치코디네이터 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의 미래 찾기: 방과후학교 확대 정책과 지역아동센터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
		최태영	구로시민센터	마음으로 만나는 도농교류 모델 연구: 구로시민생협의 경험
	연구 팀 과제	조영미 외	수원 칠보산자유학교	칠보산 마을신문 만들기
		조보영 외	해움터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마을 품앗이 '해움터': 할머니와 마실가기
2011	개인 과제	김현철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 대학원	대전지역 마을기업의 지역살림운동 중간지원 조직의 호혜적 시장 형성 전략을 중심으로
		정보연	도봉시민회	"치유와 키움의 도봉시민회"는 정말 치유하고 키웠나?
		최준영	문화연대	대안적 생활양식 구축과 새로운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민중의 집' 운동 사례분석과 이후 과제 연구
		조현철	개인 활동가	청년 귀농귀촌을 위한 연구
	연구 팀	엄은희 권인근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부산귀농학교의 역사와 지역살림의 의의
2012	개인 과제	김이경	한양대학교	지역 중심의 경제시스템 마련과 소농 자립을 위한 시민통화 *일본 도요타 시 아스케 지구 쌀 본위제 f-money*
		오윤명	씨앗들 협동조합	대학 텃밭의 활성화 방안 및 지역사회 교류 방안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지역살림을 위한 지리산권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협동 방안
	연구 팀	김선기 김달현	원주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필요성과 수요 분석에 따른 2차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

2015 모심과살림 생명·협동 연구지원공모사업 결과보고서

- 베네수엘라 협동조합운동 연구 / 하승우 땡땡책협동조합
- 협동조합과 함께 성장하다 / 김정연 다문화협동조합 모두
- 적정기술,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안병일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지공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용재 환경농업단체연합회부설연구소

2015 모심과살림 생명·협동 연구지원공모사업 결과보고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지공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집 필 최용재 (환경농업단체연합회부설연구소 연구위원)

펴낸곳 모심과살림연구소

펴낸이 박맹수

펴낸날 2015년 12월 31일



모심과살림 생명·협동 연구지원공모사업 결과보고서

2015. 12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지공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